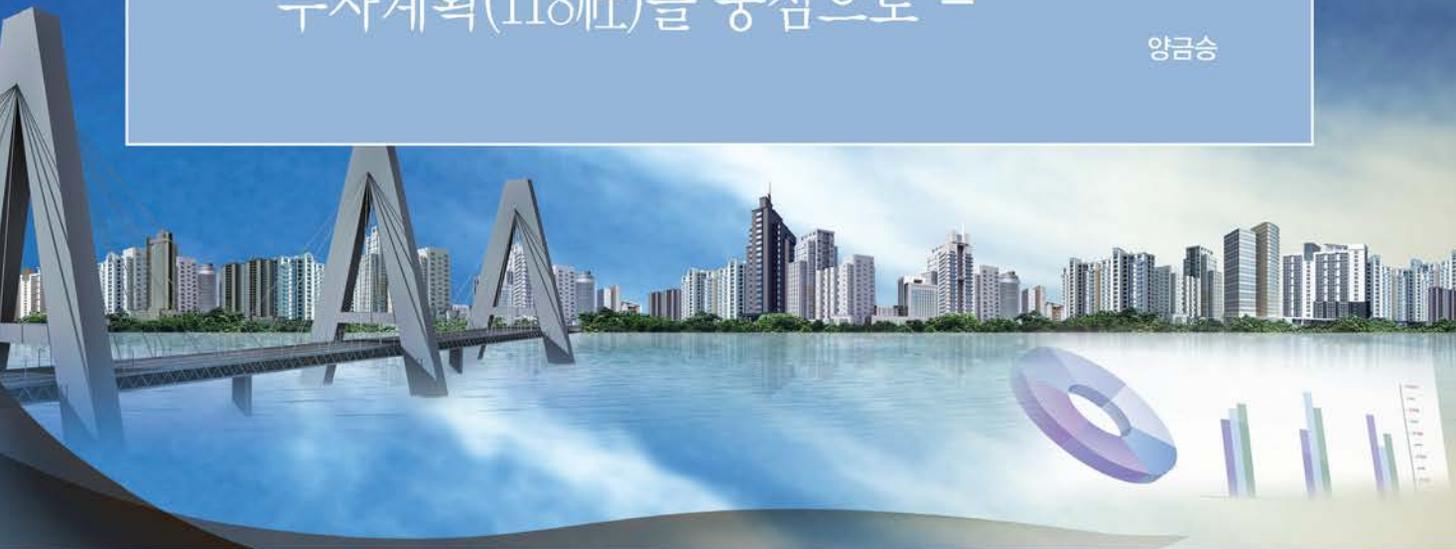


정책연구 2015-13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118社)을 중심으로 -

양금승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118社)을 중심으로 -

양금승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규제분야를 전공하여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정책팀장(2004~2006)과 규제개혁팀장(2008~2010)을 지냈으며, 주로 토지구제, 공장설립, 법정 부담금, 출자총액규제, 경영권방어 등 기업활동 규제개혁과제가 정부정책에 채택되는 데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부담금 관리기본법 등을 제안하여 입법화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산업단지 관련규제 개혁방안, 수도권규제 개선방안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여 동안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상무)을 맡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본틀을 다지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2월부터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규제개혁과 산업정책분야가 주된 관심분야이다.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1판1쇄 인쇄 | 2015년 7월 6일

1판1쇄 발행 | 2015년 7월 13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5

ISBN 978-89-8031-725-7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5010472)

CONTENTS

요약	3
I. 서론	1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14
II. 수도권규제의 현황 및 최근 규제 완화 논의동향	15
1. 수도권 권역구분 및 입지규제 현황	15
2. 역대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성과와 최근 논의동향	19
III.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의 주요 내용과 공장입지 투자계획	23
1.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의 주요 내용	23
2. 2009년 경기도 및 전경련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25
IV.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의 국내기업 공장입지 투자 및 외국인투자 현황	28
1. 최근 6년간(2008~2014) 수도권/비수도권의 제조업체 공장용지면적 증감추이	28
2.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해외직접투자(ODI) 및 주요 투자저해 사례	30
3.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현황	34
V.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의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현황 실증분석	38
1. 조사개요	38
2. 설문조사 결과분석	39
VI. 시사점 및 정책과제	51
1. 연구결과의 시사점	51
2. 정책과제	53
참고문헌	57

[표 1] 수도권정비권역의 지정현황	15
[표 2]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개요	16
[표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입지 규제현황	18
[표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 신·증설 규제현황	18
[표 5]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비교	19
[표 6] 제19대 국회 의안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표 7] 수도권규제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리	22
[표 8]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개요	24
[표 9] 경기도의 기업의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25
[표 10] 전경련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26
[표 11] 전경련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26
[표 12] 경기도+전경련 합산(중복 제외)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27
[표 13] 최근 6년간(2008~2014) 시·도별 공장용지면적 합산과 총공장등록건수 추이	28
[표 14] 최근 5년간(2009~2014) 시·도별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추이	30
[표 15] 최근 5년간(2009~2014) 시·도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31
[표 16] 경기도 소재기업의 지방이전 현황(2004~2014)	35
[표 17] 최근 5년간(2008~2013)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근 총청/ 강원지역 제조업 증가추이 비교	36
[표 18] 연도별·지역별·지원대상별 국비지원 총액 및 지원건수(기업 수) 변화 (2011~2013)	37
[표 19]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 업체수 변동현황	40
[표 20] 당초계획 대비 국내투자 실현금액과 미실현금액 비교	41
[표 21]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권역별 투자실현액 전경련-한경연 조사비교	41
[표 22]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의 변동유형	42
[표 23] 2009년 이후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한 수도권 기업의 경제적 손실 규모	44
[표 24] 2009년 이후 수도권규제로 인한 수도권 기업의 경제적 손실규모	45
[표 25]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주요 원인	45
[표 26] 수도권 공장 신·증설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경제적 손실유형(I)	46
[표 27]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유형(II)	47
[표 28] 수도권규제로 인해 투자포기/지방이전/해외이전 등을 검토 중인 주요 사례	49
[표 29] 최근 5년간(2009~2014)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비교	51

[그림 1] 최근 6년간(2008~2014) 시·도별 공장용지면적 합산과 총공장등록건수 추이	29
[그림 2]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설문조사 응답현황	38
[그림 3]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주요 원인	46



요약

I. 서론

-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갈수록 짧아짐에 따라 소비자 니즈(Needs)에 부합한 신제품 생산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공장 신·증설 투자를 적시에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 하지만,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수도권은 인구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공장 신설은 물론, 시설자동화를 위한 공장 증설조차 힘들고 외국인투자 유치가 무산되는 사례 발생
- ▶ 이에 역대정부마다 경제 활성화와 첨단업종 육성정책에 따라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비수도권의 저항에 부딪혀 수도권규제의 전면 개편보다 필요한 업종과 허용면적을 제한한 수준
 -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8.10.30)’를 통해 수도권 기업의 공장입지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첨단업종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이하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 ▶ 본 연구는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지난 5년간(2009~2014) 주요 기업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의 변동현황 실증분석을 통해 수도권규제 완화 또는 지속이 투자행태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고, 경제적 효과를 추산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09년 이후 경기도(132개사)와 전경련(81개사) 조사의 응답기업(161개사, 118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5년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규제 지속/규제 완화와 연관 분석
 - 아울러, 최근 5~6년간 전국 제조업체의 공장용지면적 증감추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의 변동추이,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으로 나눠 이전 현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규제 완화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확인

II. 수도권규제의 현황 및 최근 규제 완화 논의동향

1. 수도권 권역구분 및 입지규제 현황

- ▶ 수도권은 인구·산업의 집중도와 자연환경 등에 따라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관리되며, 수도권 입지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별 입지허용 업종 및 면적제한으로 구분
 - 공장의 경우, 수정법에서 공장총량제, 공업용지 공급물량 제한, 공업지역 지정,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 규제 등으로 총량 관리
 - 권역별 공장의 신·증설의 경우, 산업집적법에서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업종(첨단/일반), 입지유형(산업단지/개별입지)별로 차등 규제

2. 역대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성과와 최근 논의동향

- ▶ 1964년 9월,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과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으로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집중 억제에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차례 개정
 - 9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되고,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정책기조는 현재까지 지속
- ▶ 참여정부는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가 기본입장이며, 이명박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도하게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완화조치, 박근혜 정부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
- ▶ 19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10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4건은 수도권 규제 강화법안, 6건은 수도권 규제 완화법안
 - 수도권 의원은 규제 완화법안(6건)을 비수도권 의원은 규제 완화 반대법안(4건)을 상정
- ▶ 2015년 대통령 신년구상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으로 연말까지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이후, 14개 광역단체와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반대 가시화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수도권과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므로 반대한다’ 비수도권 간의 찬반논리로 양분

III.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의 주요 내용과 공장입지 투자계획

1.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의 주요 내용

- ▶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2008.10.30, 8차 국경위)는 수도권에서 공장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취지
 - 이미 공장부지로 지정되어 활용되고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존 공장 증설과 이전 규제 개선에 초점
- ▶ 공장 신·증설의 경우,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시 하였으나, 자연보전권역에서 환경보전 관련입법 추진을 전제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2. 2009년 경기도 및 전경련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 ▶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취합한 226개 기업으로부터 15조 8,531억 원의 투자계획과 2만 2,86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실태조사(조사기간: 2009.2.5~2.28) 결과를 발표
 - 이 가운데, 수도권규제 및 입지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132개사로 투자 규모는 15조 7,911억 원,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2만 5,387명으로 집계
- ▶ 전경련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직후(2010.11)와 2009년 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본사 및 공장을 갖고 있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을 실태조사
 - 2회의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1개 사로 투자 규모는 14조 3,745억 원,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1만 7,629명으로 집계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3조 4,980억 원(43개사)이었으며, 여전히 규제로 투자할 수 없다는 응답이 10조 8,765억 원(39개사). E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1조 1,765억 원(38개사) 가능하다는 응답은 43사, 3조 4,980억 원 이었다.

- ▶ 경기도와 전경련의 실태조사 중 중복된 투자계획을 제외할 경우,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 수요를 갖고 있는 기업이 161개사, 총 15조 4,311억 원에 달함

IV.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의 국내기업 공장 입지 투자 및 외국인투자 현황

1. 최근 6년간(2008~2014) 수도권/비수도권의 제조업체 공장용지면적 증감추이

- ▶ 지난 6년간(2008~2014) 수도권지역의 공장용지면적 합산과 총 공장등록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아 수도권지역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수도권지역의 공장용지면적 합산과 총공장등록건수의 연평균 증가율(2.58%, 3.74%)은 비수도권(3.68%, 4.86%)보다 낮고, 전국평균 증가율(3.58%, 4.38%)에도 미치지 못함
 - 이는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지방경제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오히려 수도권규제 지속과 높은 땅값 등으로 수도권의 제조업 위축 현상이 진행됨을 반증

2.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해외직접투자(ODI) 및 주요 투자저해 사례

- ▶ 지난 5년간(2009~2014) 수도권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6.11% 증가하여 전국 평균(10.6%)보다 4.49%p 낮음. 비수도권의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보다 2.5배가량 많은 15.33% 기록
 - 전국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수도권이 2009년 58%에서 2014년 47%로 11%p가량 줄어들었으나, 비수도권은 34.4%에서 42.4%로 8%p가량 늘어남
- ▶ 지난 5년간(2009~2014)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비해 다소 둔화. 수도권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제조업부문은 높음

- 지난 5년간 수도권외의 해외직접투자 금액 연평균 증가율은 2.02%로 전국 평균 3.59%와 비수도권 10.54%보다 각각 1.57%p, 8.52%p 낮은 반면, 제조업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이 12.53%로 전국 평균 10.02%, 비수도권 4.99%보다 2.33%p, 7.54%p 각각 높음

▶ 이와 같이 2013년 이후 해외직접투자 금액과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간의 격차는 축소되었으나, 수도권규제 등 열악한 입지여건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쳐 수도권지역 제조업 자본 유출로 연결

- 지난 5년간(2009~2014)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액(880억 6,500만 불)보다 1.8배 이상 많은 투자금액이 해외직접투자(1,572억 7,200만 불)로 국외로 유출되었는데, 자본적자의 누계액(692억 700만 불)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발생(757억 7,600만 불)
- 이는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수도권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지속적이고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인해 국내기업의 공장 신·증설 투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저해하여 투자를 포기·철회하거나, 투자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레고랜드의 이천시 투자 철회 사례(1999년) : 자연보전권역의 관광지조성 면적제한 규제
- GSK(글로벌 백신기업)의 화성시 투자 철회 사례 :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 페어차일드코리아 부천시 투자 포기 사례 : 과밀억제권역 공장 증설 제한 규제
- 유니버설스튜디오의 화성시 투자 지연 사례 : 토지사용료 등으로 인해 투자담보 상태
- 서울시의 디즈니랜드 유치 실패 사례 : 개발제한구역 등 수도권규제
- 3M 화성 공장 착공 지연 사례 :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주 제한
- 스테츠칩팩코리아 이천공장의 영종도 이전 사례 : 자연보전권역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

3.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현황

▶ 최근 5년간 시·도별 제조업체 수 증가 추이와 경기도 소재기업의 비수도권으로 이전 현황의 경우, 수도권 인근인 충청도/강원도의 기업이전과 제조업 신설이 많아 수도권의 연담화 현상이 심화

- 지난 10년 동안(2004~2014) 경기도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545개사)의 63.7% (341개사)는 충청권(43.4%, 232개사), 강원도(20.4%, 109개사) 등 수도권 인접지역 특히 최근 5년간(2008~2013) 수도권의 제조업체수 증가는 5%로 전국 평균(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나, 인접지역인 충남북도는 25%, 강원도는 18%로 높게 나타남

V.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의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 현황 실증분석

1.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현황

-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에서 투자시기를 놓쳐 실현하지 못했거나 보류 중인 기업(64개사/118개사, 54.2%)이 투자를 실현(투자시기 지연 후 실현 포함)한 기업(49개사/118개사, 49.2%) 보다 많음
- ▶ 2009년 이후 응답기업(118개사)의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금액 집행 여부 분석결과, 당초 투자금액 15조 1,838억 원의 39.1%(5조 9,299억 원)를 국내에 투자하여 1만 1,710명의 고용을 창출. 수도권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투자 보류, 투자계획 철회/포기, 해외이전으로 투자를 실현하지 못한 금액은 당초 투자계획의 15.0%(2조 2,790억 원)이며, 이의 고용창출 예상 인원은 1만 2,449명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을 위해 5조 4,473억 원이 투자되어 1만 440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2009년 6월 전경련 조사(41개 기업, 3조 4,430억 원 투자, 1만 184명 고용창출)에 비해 투자금액은 58.2%(2조 43억 원) 증가
 - 투자금액이 큰 H사를 제외할 경우, 총 3조 3,473억 원(48개사)을 투자하여 2009년 6월 조사에서 파악된 3조 4,430억 원(41개사)의 97.2% 수준으로 비슷한 규모 유지
- ▶ 제한적인 규제 완화와 수도권규제 지속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투자계획을 철회했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28개사, 9,603억 원)가 지방이전(9개사, 4,826억 원)보다 2배가량 많음
 - 수도권규제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10개사)의 이전지역 분포는 경기도 인접지역인 충청도와 강원도 8개사, 기타 지역 1개사(경북)
- ▶ 공장입지투자가 보류 중(1조 3,186.5억 원, 2,876명)인 경우, 자연보전권역이 70%가량(9,401억 원, 1,685명)이며, 과밀억제권역(3,165.5억 원, 423명), 성장관리권역(620억 원, 768명) 순

2.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

- ▶ 2009년 이후, 62개 기업은 수도권 입지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계획 철회, 투자 보류, 투자 시기 지연, 지방이전 등으로 발생한 투자손실, 금융비용 등 경제적 손실은 3조 3,329억 원이며, 1만 2,0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짐

- 투자손실액은 2조 2,863.5억 원, 금융비용 부담과 시장개척 차질, 매출 및 영업이익 손실 등 간접적인 손실 규모는 1조 466억 원

▶ 2009년 이후, 순수 수도권규제만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52개 기업을 합쳐 총 2조 6,609억 원이며, 3,83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없어졌음

- 투자손실액은 1조 6,618억 원, 금융비용 부담과 시장개척 차질, 매출 및 영업이익 손실 등 등 간접적인 손실 규모는 9,992억 원

▪ 자연보전권역은 2조 2,398억 원으로 10개 기업 중 8개 기업(84.2%)이 해당되며, 과밀억제 권역은 2,399억 원, 성장관리권역은 1,812억 원

3.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주요 원인

▶ 응답기업(89개사)은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 주요 요인으로 2곳 중 1곳 (54.2%, 58건/107건) 이상이 수도권 입지규제 등을 지적. 경기침체·관련산업 위축, 높은 땅값과 고임금 등 대외환경요인은 18.7%, 경영계획 변경과 자금조달 곤란 등 내부경영 요인은 11.2% 순으로 꼽음

4.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 적기 상실/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유형

▶ 수도권규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응답기업들은 '투자 및 고용 창출 기회 감소'(26.1%), 공장시설 효율화가 지연됨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곤란' (19.2%), '기술개발 및 품질경쟁력 저하'(16.2%) 순으로 경제적 손실이 많다고 지적

5. 수도권규제로 인한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주요 사례

▶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법 등 수도권 관련규제 이외에 국토계획법, 환경정책 기본법, 개발제한구역특례법 등으로 중첩적으로 규제되어 공장입지 투자계획을 포기하거나 보류하게 됨

- 특히 과밀억제권역은 개발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은 건폐율/용적률 규제와 폐수배출 규제, 자연보전권역은 수질관련 환경 규제/공업용지조성면적 제한이 기업투자를 제약

VI.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시사점

-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지방경제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오히려 수도권 규제 지속과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Inward FDI(외국인직접투자)보다 Outward FDI(해외직접투자)가 3배가량 많아 수도권 제조업의 위축현상이 빠르게 진행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에도 지난 6년간(2008~2014) 비수도권의 공장용지면적과 총공장등록건수의 연평균 증가율(3.68%, 4.86%)은 수도권(2.58%, 3.74%)보다 높은 반면,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은 물론 전국 평균(3.58%, 4.38%) 보다 낮음
 - 오히려 수도권은 수도권규제 등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낮고,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높아 제조업의 자본 유출이 심각한 상황
 - 글로벌 환경에서 수도권규제 등으로 기업이 적절한 투자시기를 놓칠 경우, 투자를 포기하거나, 국내투자자금이 세계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처로 옮겨가는 것을 입증
- ▶ 시·도별 제조업체수 증가추이와 경기도 소재 기업의 비수도권으로 이전 현황 분석 결과, 수도권규제는 지역 균형발전보다 수도권지역의 연담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기업의 투자 실현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나, 그 정도는 제한적이고, 자연보전권역의 완화조치 미시행, 토지/환경 등 중복규제는 여전히 상당한 투자 미실현에 영향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로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효과는 당초 투자계획(15조 1,838억 원)의 35.9%(5조 4,473억 원) 수준. 대폭적인 투자 실현 증가는 없음
- ▶ 반면, 수도권규제의 지속은 기업공장의 지방이전보다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놓쳐 투자를 포기/철회하거나, 불가피하게 해외로 공장이전을 선호하는 등 ‘규제의 풍선효과’가 미미
 - 제한적인 규제 완화와 수도권규제 지속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해외 공장이전(28개사, 9,603억 원)이 지방이전(9개사, 4,826억 원)보다 2배가량 많음
- ▶ 2009년 이후, 62개 기업이 수도권규제 등으로 투자적기를 놓쳐 발생한 미투자금액, 금융비용 등 경제적 손실 규모는 3조 3,329억 원이며, 1만 2,0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음

2. 정책과제

- ▶ 지난 6년간(2009~2014)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로 인한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 투자 변동 분석 결과,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수도권규제는 기업공장의 지방이전 보다는 투자 타이밍을 놓쳐 투자계획 포기 또는, 해외 공장이전이 2배가량 높아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
- ▶ 또한, 글로벌화 진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도시 및 지역경제권이 형성되어 국가 간 경쟁 또는 국내지역 간 경쟁구도가 아닌 세계 대도시권(Mega City Region, 메가시티)과의 경쟁 관계로 재편됨에 따라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므로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수도권규제 위주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지방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상생발전전략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 ▶ 따라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추진하되,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 인프라와 기업유인체계를 동시에 정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국토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 정책으로 인해 중앙행정 기관의 세종시로의 입주가 완료되고, 공기업의 혁신도시 이전 등이 상당히 진전되는 등 지방발전의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므로 이제 수도권규제에 기업투자가 묶여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수도권의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신설 허용
 -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관리기본법으로 전환 하여 과밀억제권역 위주로 대폭 축소하고, 이전적지 및 낙후지역에 정비발전지구 도입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갈수록 짧아짐에 따라 소비자 니즈(Needs)에 부합한 신제품 생산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공장 신·증설 투자를 적시에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투자는 적정시기를 놓치게 되면, 고용창출과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신제품 출시 지연,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 초래
- ▶ 하지만,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수도권은 인구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공장 신설은 물론, 시설자동화를 위한 공장증설조차 힘들고 외국인투자 유치가 무산되는 사례 발생
 - 수도권규제를 유지·강화하게 되면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고, 그 결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둬
 - 그러나 기업은 투자 타이밍에 맞게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내외 경영환경이 변화되거나 글로벌 경쟁업체에 밀려 당초 계획된 투자를 못하게 되거나,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생산 요소의 이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생산거점을 해외지역으로 옮기는 선택¹⁾을 하게 됨
- ▶ 이에 역대정부마다 경제 활성화와 첨단업종 육성정책에 따라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비수도권의 저항에 부딪혀 수도권규제의 전면 개편보다 필요한 업종과 허용면적을 제한한 수준
 - 특히,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8.10.30)'를 통해 수도권 기업의 공장입지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첨단업종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이하

1) OECD(2007a)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경제적 지리는 계속 변화하며, 지역경제 변화과정은 세계화에서 비롯됨을 지적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²⁾

-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2008.11, 2009.6)³⁾와 경기도(2009)⁴⁾는 이명박 정부의 ‘10.30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 규모를 조사하여 발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9.1.16)으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기존 공장의 신·증설 투자가 가능해졌으나, 자연보전권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해 소재기업의 투자 실현에 어려움

▶ 201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밝힌 이후 수도권규제 완화가 다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양상

- 특히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은 기업경쟁력 강화 등 경제논리로 규제 완화를 지지하고, 충청·강원도 등 비수도권은 균형발전 등 정치논리를 내세워 수도권규제 완화에 반대

▶ 따라서 2008년 10월, 이명박 정부의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6년이 지난 2015년 3월 현재,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의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규제완화 및 규제 지속이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수도권 정책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 투자가 늘어나 지방경제 위축으로 연결되었는지 여부와 5년간 수도권 기업의 투자행태 변화를 통해 규제 실효성의 검증 필요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으로 분석함으로써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009년 이후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고 파악된 기업(전경련과 경기도 조사)을 대상으로 투자계획 변동현황 설문조사를 통해 2015년 3월 현재, 실제로 투자계획이 어떻게 변화(투자 실현, 지연 후 투자 실현, 투자 포기, 투자 보류, 지방 이전, 해외이전 등)되었고, 어떤 시사점이 도출되는지를 실증분석

▪ 전경련(2008, 2009)의 경우, 수도권규제 완화(2008)로 인한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에 대한 투자 및 고용효과를 단순히 분석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2008.10.30.). 상세내용은 III.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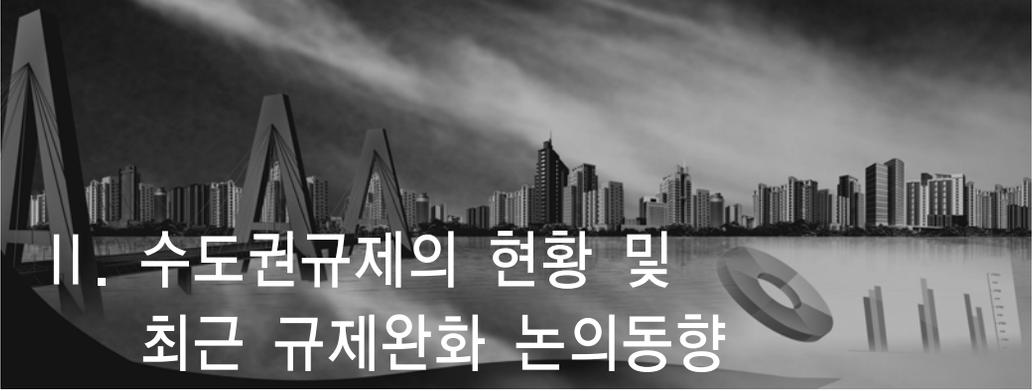
3) 전국경제인연합회, 수도권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효과와 보완과제(2009.7)(146개사 응답 업체 중 81개사 투자 가능 회신, 투자 실현 3조 4,430억 원(41개사), 투자 불능 10조 8,450억 원(39개사))

4) 경기도, 기업투자 현황(2009.2.5.~2.28), 226개 업체에서 15조 8,531억 원의 투자계획 조사

- 김은경(2008) 등은 수도권규제 개선(2008)으로 인한 96개 첨단업종 투자 허용의 경제적 효과를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2003)로 생산/취업효과 분석
- 본 연구는 전경련(2008, 2009)과 경기도(2009)의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재조사를 실시해 당초 계획 대비(2009년 이후) 투자 계획 변동현황, 경제적 손실분석을 통해 수도권규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함
- 즉, 수도권규제 완화 → 지방경제 위축 또는 규제 지속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투자계획 포기/해외이전 등 규제 완화 또는 규제 지속의 인과관계 검증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지난 5년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 계획의 변동현황을 실태 조사하여 수도권규제 완화 또는 지속이 투자행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수도권정책을 둘러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지난 5년간(2009~2014) 권역별로 투자 실현, 지연 후 투자 실현, 투자 포기/철회, 지방이전, 해외투자 등 투자행태 변화는 규제 완화 또는 규제지속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의 검증
 - 아울러, 투자 적기 상실/지연의 주된 원인을 대외환경요인(경기침체/관련산업 위축)과 내부경영요인(경영계획 변경 등), 수도권규제 등 제도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업인식 조사
- ▶ 아울러 지난 5년간 시도별 공장용지면적/공장등록수,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분석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현황 분석으로 통계적으로 규제효과를 검증



II. 수도권규제의 현황 및 최근 규제완화 논의동향

1. 수도권 권역구분 및 입지규제 현황

(1) 수도권 권역구분

▶ 수도권은 인구·산업의 집중도와 자연환경 등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허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표 1] 수도권정비권역의 지정현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 적 (11,818km)	2,064km ² (17.5%)	5,924km ² (50.1%)	3,830km ² (32.4%)
인 구 (25,299천 명)	19,269천명 (76.3%)	4,954천명 (19.5%)	1,076천명 (4.3%)
행정구역	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일부), 남양주(일부), 시흥(일부) - 16개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인천(일부), 남양주(일부), 시흥(일부), 용인(일부), 안성(일부) - 14개 시, 1개 군	이천, 광주, 가평, 양평, 여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안성(일부) - 6개 시, 2개 군
지정취지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2013 말 기준), 2015.4



(2) 수도권 입지규제 현황

▶ 수도권의 입지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의한 행위제한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의한 권역별 입지허용 업종 및 면적제한으로 구분

- 수정법에 의한 행위제한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일반대·교육대, 공장, 대형건축물,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제한(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권역별로 설정

[표 2]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개요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 학	4년제 대학 · 교육대학	신설 : 금지 이전 : 권역 내 또는 타 권역으로 이전 가능	신설 : 금지 이전 : 금지
	소규모 대학	신설 : 심의 후 가능 이전 : 권역 내 또는 타 권역으로 이전 가능	신설 : 심의 후 가능 이전 : 권역 내 가능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신설 : 가능(대학원대학 이외 경우 서울 금지) 이전 : 가능 *서울 안으로 이전은 금지	신설 : 가능 이전 : 권역 내, 타 권역으로 이전은 가능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학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량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 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 후 허용 - 산업·전문대학은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 이내 허용, 10% 초과는 심의 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 이내 허용(첨단 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 후 허용 		
	대학통폐합	○ 대학·전문대학 통·폐합 : 수도권 심의를 거쳐 한시적 허용(2012. 12까지)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은 수도권 심의를 거쳐 한시적 허용(2011.9.28까지)		
대형건축물 (판매 15천㎡, 업무 등 25천㎡)	-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시에 한함. 단, 금융중심 지 내 금융업소, 산업단지 내 R&D시설은 면제)	- 규제 없음	- 금지(단,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은 허용)	
공공청사(1천㎡)	- 신축, 증축 용도변경 : 심의 * 비수도권 법인의 수도권 이전을 위한 신축은 금지	- 신축, 증축 용도변경 : 심의 * 비수도권 법인의 수도권 이전을 위한 신축은 금지	- 신축, 증축 용도변경 : 심의 * 비수도권 법인의 수도권 이전을 위한 신축은 금지	
연수시설(3만㎡)	- 금지	- 19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20% 이내 허용 - 신축, 증축 심의 후 허용	-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수도 권 심의를 거쳐 신·증축 허용 - 1994.4.30 이전 기존시설 면적 의 10% 증축 허용	
공업지역 지정	- 위치변경만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 지역 허용	-	
택지조성	- 10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10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 도시지역 : 10만㎡ 이상 심의 • 비도시지역 : 10만㎡~ 50만㎡ 심의 후 허용 [오염총량제 미시행지역] • 3만~6만㎡ 이하 심의 후 허용	
도시/지역개발	- 10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10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3만~6만㎡ 이하 심의 후 허용 (단,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은 도시지역 : 10만㎡ 이상, 비도시 : 10만~50만㎡ 심의 후 추가 허용)	
공업용지조성	- 3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3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3만~6만㎡ 이하 심의 후 허용	
관광지조성	- 1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1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3만~6만㎡ 이하 심의 후 허용 (단,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은 3만㎡ 이상 심의 후 허용)	

자료 : 국토교통부(2015)

- 공장의 경우, 수정법에서는 공장총량제, 공업용지 공급물량 제한, 공업지역 지정,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규제 등으로 총량 관리

[표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입지 규제현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총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인천·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면적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공장 신·증설 및 용도변경을 허가(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 및 개별입지가 적용대상 		
공업용지 공급물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2014.4 현재, 18.9%). 다만, 기존 개별입지 공장 집단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시 산업단지 공급물량 30% 내에서 추가 공급 		
공업지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변경만 허용(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 범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 허용 	-
공업용지 조성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만㎡ 이상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 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만~6만㎡ 이하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 후 허용

- 권역별 공장의 신·증설의 경우, 산업집적법에서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업종(첨단/일반), 입지유형(산업단지/개별입지)별로 차등규제

[표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 신·증설 규제현황

	기업규모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산업단지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이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이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 이내 증설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이 신·증설
공업지역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천㎡ 이내 증설(첨단업종은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부지 내 증설(첨단업종은 제한 없이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 이내 증설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이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이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 이내 증설
기타지역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 이내 증설(첨단업종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천㎡ 이내 증설(첨단업종은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 이내 증설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이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이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 이내 증설

▶ 수도권에는 수정법 및 산업집적법상 규제 이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상 수질관리 및 군사시설 등 여러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

- 수도권 내 한강 인근은 수도법상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수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환경규제 대상지역

- 경기북부 상당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제한규제 등을 중첩적으로 적용받음

2. 역대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성과와 최근 논의동향

(1) 참여정부 이후의 수도권규제 완화성과

- ▶ 1964년 9월,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과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으로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집중 억제에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차례 개정
 - 9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되어,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정책기조는 현재까지 지속

[90년대 주요 수도권규제 완화내용]⁵⁾

- 대형건축물에 대한 물리적 입지 제한에서 과밀부담금 부과 등 경제적 방식으로 전환(1994)
- 공장, 대학에 대한 개별 입지규제에서 총량 입지규제로 전환(1994)
- 인천 영종도 및 송도 매립지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1998)
-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하여 과밀부담금 면제(1998)

- ▶ 참여정부는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가 기본입장이며, 이명박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도하게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완화조치, 박근혜 정부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

[표 5]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비교

	기본입장 및 규제 완화 주요 내용
참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입지규제를 완화하되,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갖춘 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원칙 고수(‘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혁신도시)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2005.6.24) • 공장총량의 설정주기를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규제를 일부 완화하였으나, 수도권 분산을 우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공장총량 설정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3년치 총량범위에서 공장 설립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의 택지개발을 하한규제로 전환

5) 김주현(2014), 수도권규제 문제점과 합리화 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기본입장 및 규제 완화 주요 내용
	-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국내 대기업 8개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2005.11.4, 고위당정 간담회)
이명박 정부	• 기업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에서 공장용도로 지정된 지역 안의 기존 공장 증설 및 첨단업종의 투자에로 해소(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10.30) → 세부사항은 III. 참조
박근혜 정부	• 2015년 신년구상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말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의지 표명

(2) 최근 수도권규제 관련 입법동향 및 주요 쟁점 검토

가. 최근 수도권규제 관련 입법동향

▶ 19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10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4건은 수도권규제 강화법안, 6건은 수도권규제 완화법안

- 수도권 의원은 규제 완화법안(6건)을 비수도권 의원은 규제 완화 반대법안(4건)을 상정

[표 6] 제19대 국회 의안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⁶⁾

구분	제안자	제안요지
수도권규제 강화 법안	현영희 의원 등 12인 (2013.4.23)	• 지방대학이 무분별하게 수도권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과밀화, 국가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설 및 증설을 명확히 정의, 허가 시 신증설에 따른 영향 및 균형발전 고려
	이명수 의원 등 10인 (2013.6.24)	• 지방에 설치된 대학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 제한
	박완주 의원 등 18인 (2013.9.10)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공장총량의 결정,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수도권 정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윤후덕 의원 등 11인 (2013.11.5)	• 서울특별시로의 과밀부담금 배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수도권규제 완화 법안	이학재 의원 등 24인 (2013.9.6)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공항 및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증설 허용
	김학용 의원 등 10인 (2014.8.1)	• 공공청사 등 이전지역, 기존 공업지역 정비 필요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등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 완화의 정비발전지구 도입 • 정비발전지구에는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 규정과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않음

6) 김주현(2014)의 보고서를 수정/추가 보완

구분	제안자	제안요지
	함진규 의원 등 10인 (2012.9.28)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폐지될 지역과 신규 지정될 지역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해 5년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중복지정 허용
	김영우 의원 등 10인 (2012.9.28)	•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낙후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비발전지구 도입
	김을동 의원 등 10인 (2012.10.19)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국가안보상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예외 허용
	이재영 의원 등 10인 (2012.6.19)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지방발전정책과 상호 연계되는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 수도권 범위를 서울, 인천, 경기도의 시지역으로 한정.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낙후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역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나. 수도권규제 완화를 둘러싼 주요 쟁점 검토(찬반 입장)

▶ 2015년 대통령 신년구상 기자간담회에서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으로 연말까지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이후, 14개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반대 가시화

-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내용(2015.1.12) :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지난해에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자고 해서 수도권규제가 규제 단두대에 올라옴”. “수도권규제 완화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수렴해 만들어서 올해는 수도권규제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음”
- 14개 광역단체장과 지역대표 국회의원 중심,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000만 서명운동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수도권과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므로 반대한다’는 비수도권 간의 찬반 논리로 양분

[표 7] 수도권규제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리⁷⁾

규제 완화 반대논리	규제 완화 찬성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지역은 인구·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교통·주택·환경오염 등 각종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여 국가적 비효율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적 도시들이 메가시티 전략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진력하는 시대 조류에 역행 수도권 내 기업의 역차별 심각. 시설 합리화, 재산권 침해 등 규제로 인해 막대한 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규제가 지속돼야 과밀화가 억제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 낙후원인을 수도권 집중으로 보고, 수도권을 규제해야 가능 분산, 지방발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개방경제에서 '규제의 풍선효과'는 없음. 기업환경 좋은 지역에 기업투자. 과도한 규제는 해외이탈 유발 수도권 산업공동화, 기업의 적기투자 저해 등 경제 악영향.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규제 완화는 균형발전 저해, 지방산업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의 기업투자가 약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에 기업투자 위해 기업환경 조성 우선 특정지역의 성장억제보다 자생적 성장유도 및 낙후지역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이 바람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이 산업과 인구를 블랙홀처럼 흡수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이전기업의 U-turn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규제 완화 시, 높은 땅값, 인건비, 주민민원 등 각종 비용 감수가능 기업은 제한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기업 외에 지방기업 인접부지 증설 시 시너지 효과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규제 완화는 먼저 지방발전 인프라 구축 후 검토 필요. 시기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정부 시 결정한 세종시, 혁신도시 이전이 완료 → 수도권규제 완화 적정시기

7) 양금승(2008), "수도권규제 완화의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기도(2004),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윤철현·손태민(1996), "수도권 분산정책의 평가와 대응권 개발논리, 국토계획 31(5):29~46, 김경환·임상준(2004), 수도권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쟁점 정리,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론자들은 지방산업의 침체 및 위기원인을 수도권 집중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음[김재철 (2001) 참조]

Ⅲ.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의 주요 내용과 공장입지 투자계획

1.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의 주요 내용

- ▶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2018.10.30, 8차 국경위)는 공장용도로 지정된 수도권지역에서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취지
 - 이미 공장부지로 지정되어 활용되고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존 공장의 증설과 이전규제 개선에 초점
- ▶ 공장 신·증설의 경우,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시 하였으나, 자연보전권역에서 환경보전 관련입법 추진을 전제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업종에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고,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외에는 기존 공장의 증설범위 확대
 - 모든 첨단업종(96개 업종)의 기존 공장 증설범위를 확대
 - 공업지역 내 : 3천㎡ 이내(14개 업종은 100% 이내) → 규모제한 폐지
 - 공업지역 외 : 14개 업종만 100% 이내 →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 이내 증설
 - 첨단업종 외의 공장은 기존부지 내에서 증설을 허용
 -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 확대(8개 업종 → 모든 업종)
 -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 내 공장증설범위 확대
 - 공업지역 내 : 첨단업종(1천㎡ 이내→200% 이내), 기존부지 내 증설(10개 업종→전체 업종)
 - 공업지역 외 : 첨단업종(1천㎡ 이내→100% 이내)
 -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오염총량제 의무화 시행방안 확정 및 관련입법(2009.4)을 추진)하고,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 도시·지역개발사업(6만㎡ 이내) 등 개발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대형건축물 등의 입지 허용

- 기타 공장입지 등 규제 개선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고,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에서 배제하고, 2009년부터 산업단지 공급물량은 지자체 수요를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공급
- 서울은 도시형 첨단산업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지식·문화·IT 산업이 입주하는 소규모(1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연면적 200㎡ 이상)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건축면적 산정 시 오염배출시설이 아닌 창고·사무실 제외

[표 8]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개요

구 분		현 행		개 선	
과밀 억제 권역	대기업	산업단지	• 신·증설 원칙적 금지	• 전 업종·규모 허용	
		산업 단지 외	공업 지역	• 신·증설 원칙적 금지 - 첨단업종 신·증설 : 1천㎡ 이내 - 기존 공장 부지 내 증설(10개 업종)	• 첨단업종 증설 확대 - 1천㎡ → 200% 이내 증설 - 기존 공장 부지 내 증설 (10개 업종 → 모든 제조 업종)
			기타	• 신·증설 원칙적 금지 - 첨단업종·증설 : 1천㎡ 이내	• 첨단업종 증설 확대 - 1천㎡ → 100% 이내
	중소 기업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	• 제한 없음 - 단, 공업지역·기타 : 첨단업종·도시형 공장 신·증설, 기존 공장 증설 및 이전	• 현행과 같음	
성장 관리 권역	대기업	산업단지	• 신·증설 원칙적 금지	전 업종·규모 허용	
		산업 단지 외	공업 지역	• 신·증설 원칙적 금지 - 기존 공장 3천㎡ 이내 증설 (14개 업종은 100% 이내)	• 증설 및 이전 허용 업종 확대 - 모든 첨단 업종 규모 제한 폐지 ※ 첨단업종 외 업종은 기존부지 내만 증설 허용
			기타	• 신·증설 원칙적 금지 - 14개 첨단업종 기존 공장 100% 이내 증설	• 증설 허용 업종 확대 - 14개, 100% → 96개 모든 첨단업종 200% 이내 증설 ※ 첨단업종외 업종은 기존부지 내만 증설 허용
	중소 기업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	• 제한 없음	• 현행과 같음	

구 분		현 행	개 선
자연 보전 권역	대기업	산업단지	• 신·증설 금지
		공업 지역	• 신·증설 금지 - 첨단업종은 도시형공장(3천㎡ 이내) 허용
		산업 단지 외 기타	• 신·증설 금지 - 첨단업종은 도시형공장(1천㎡ 이내) 허용
	중소 기업	산업단지, 공업지역	• 도시형공장(3천㎡ 이내)
		기타	• 도시형공장(1천㎡ 이내)

2. 2009년 경기도 및 전경련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 ▶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취합한 226개 기업으로부터 15조 8,531억 원의 투자계획과 2만 2,86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실태조사(조사기간: 2009.2.5~2.28) 결과를 발표
- 이 가운데 수도권규제 및 입지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132개사로 계획 규모는 15조 7,911억 원,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2만 5,387명으로 집계
 - 권역별로 E반도체(13조 원)가 포함된 자연보전권역(53개사, 13조 9,830억 원)이 가장 많았고, 성장관리권역(56개사, 1조 315억 원), 과밀억제권역(23개사, 7,766억 원) 순

[표 9] 경기도의 기업의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구분	투자계획 (억 원)	고용계획(명)		
		소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과밀억제권역(23개사)	7,766	11,447	11,103	344
성장관리권역(56개사)	10,315	6,981	6,034	947
자연보전권역(53개사)	139,830	6,959	6,959	133
합계(132개사)	157,911	25,387	25,963	1,424

자료 : 경기도, '기업투자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수도권규제 등으로 투자계획 보유기업 발췌, 2009년 이후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 추가

▶ 전경련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직후(2010.11)와 2009년 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본사 및 공장을 갖고 있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을 실태조사

- 2회의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1개사로 투자 규모는 14조 3,745억 원,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1만 7,629명으로 집계
- 권역별로 H반도체(9.7조 원)가 포함된 자연보전권역(23개사, 10조 9,502억 원)이 가장 많았고, 성장관리권역(42개사, 2조 6,529억 원), 과밀억제권역(16개사, 7,714억 원) 순

[표 10] 전경련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구 분	투자계획 (억 원)	고용계획(명)		
		소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과밀억제권역(16개사)	7,714	4,457	4,447	10
성장관리권역(42개사)	26,529	7,437	7,202	235
자연보전권역(23개사)	109,502	6,030	5,980	50
합계(81개사)	143,745	17,924	17,629	295

자료 : 전경련(2009), 「수도권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효과와 보완과제」 조사결과에 2008년 11월 조사기업 중 일부 기업(6개사) 추가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3조 4,980억 원(43개사)이었으며, 여전히 규제로 투자할 수 없다는 응답이 10조 8,765억 원(39개사). H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1조 1,765억 원(38개사)

[표 11] 전경련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단위 : 억 원, 명)

구분	투자 가능		투자 불가능		합계	
	투자금액	고용효과	투자금액	고용효과	투자금액	고용효과
과밀억제권역	6,979 (10개사)	3,797	645 (7개사)	695	7,624 (15개사)	4,492
성장관리권역	22,969 (28개사)	6,077	3,650 (17개사)	1,325	26,619 (43개사)	7,402
자연보전권역	5,032 (5개사)	310	104,470 (19개사)	5,610	109,502 (23개사)	5,920
합계	34,980 (43개사)	10,184	108,765 (39개사)	7,630	143,745 (81개사)	17,814

자료 : 전경련(2009), 「수도권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효과와 보완과제」 조사결과에 2008년 11월 조사기업 중 일부 기업(6개사) 추가

- ▶ 경기도와 전경련의 실태조사 중 중복된 투자계획을 제외할 경우,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 수요를 갖고 있는 기업이 161개사, 총 15조 4,311억 원에 달함

[표 12] 경기도+전경련 합산(중복 제외)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구 분	투자계획 (억 원)	고용계획(명)		
		소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과밀억제권역(34개사)	13,365	12,887	12,543	344
성장관리권역(70개사)	29,794	11,305	10,358	947
자연보전권역(57개사)	111,152	7,029	6,896	133
합계(161개사)	154,311	31,221	29,797	1,424

* 경기도 조사기업(132개사)과 전경련 조사기업(81개사) 중, 중복기업(52개사)은 전경련 조사자료 데이터 적용

IV.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의 국내기업 공장입지 투자 및 외국인투자 현황

1. 최근 6년간(2008~2014) 수도권/비수도권의 제조업체 공장용지면적 증감추이

- ▶ 지난 6년간(2008~2014년) 수도권지역의 공장용지면적 합산과 총공장등록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아 수도권지역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수도권지역의 공장용지면적 합산과 총공장등록건수의 연평균 증가율(2.58%, 3.74%)은 비수도권(3.68%, 4.86%)보다 낮고, 전국 평균 증가율(3.58%, 4.38%)에도 미치지 못함
 -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공장용지면적 합산의 전국 대비 비중은 2008년 24.3%에서 2014년 22.9%, 총공장등록건수는 2008년 50.1%에서 2014년 48.3%로 감소 추세
 - 서울시의 공장용지면적 합산은 갈수록 감소하고, 인천시의 공장용지 증가율은 미미한 반면, 대구(5.22%, 5.11%), 충남(5.06%, 4.85%), 충북(4.14%, 5.04%), 경남(3.71%, 4.46%) 등 비수도권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공장용지면적 합산과 총공장등록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지방경제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오히려 수도권규제 지속과 높은 땅값 등으로 수도권의 제조업 위축 현상이 진행됨을 반증

[표 13] 최근 6년간(2008~2014) 시·도별 공장용지면적 합산과 총공장등록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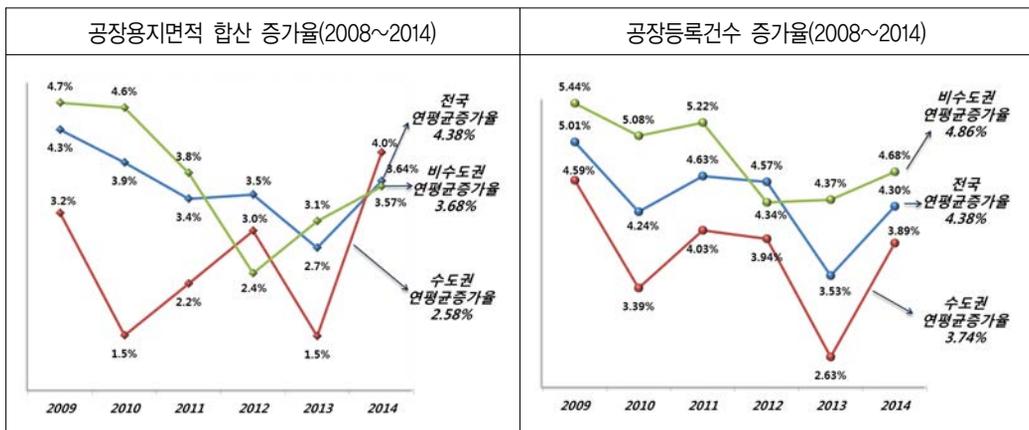
(단위 : m², 개, %)

구 분		2008	2010	2012	2014	연평균 증가율
전국	용지면적 합산	623,388,983 (100.0)	675,770,592 (100.0)	722,890,566 (100.0)	769,700,438 (100.0)	3.58
	공장등록건수	132,335 (100.0)	144,855 (100.0)	158,492 (100.0)	171,140 (100.0)	4.38
수도권	용지면적 합산	151,357,747 (24.3)	158,607,203 (23.5)	166,971,404 (23.1)	176,353,710 (22.9)	2.58
	공장등록건수	66,293 (50.1)	71,687 (49.5)	77,512 (48.9)	82,648 (48.3)	3.74

구 분		2008	2010	2012	2014	연평균 증가율
서울	용지면적 합산	4,164,416 (0.7)	3,844,862 (0.6)	3,859,237 (0.5)	3,625,397 (0.5)	△2.28
	공장등록건수	10,211 (7.7)	10,506 (7.3)	11,008 (6.9)	10,980 (6.4)	1.22
인천	용지면적 합산	20,277,440 (3.3)	20,341,850 (3.0)	21,093,669 (2.9)	21,610,855 (2.8)	1.07
	공장등록건수	8,510 (6.4)	9,313 (6.4)	9,872 (6.2)	10,538 (6.2)	3.63
경기	용지면적 합산	126,915,890 (20.4)	134,420,492 (19.9)	142,018,497 (19.6)	151,117,458 (19.6)	2.95
	공장등록건수	47,572 (35.9)	51,868 (35.8)	56,632 (35.7)	61,130 (35.7)	4.27
비수도권	용지면적 합산	472,031,236 (75.7)	517,163,388 (76.5)	549,361,379 (76.0)	586,563,378 (76.2)	3.68
	공장등록건수	66,042 (49.9)	73,168 (50.5)	80,333 (50.7)	87,767 (51.3)	4.86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 자료, 2015.3

[그림 1] 최근 6년간(2008~2014) 시·도별 공장용지면적 합산과 총공장등록건수 추이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 자료, 2015.3

2.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해외직접투자(ODI) 및 주요 투자저해 사례

(1) 최근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변동추이

▶ 지난 5년간(2009~2014) 수도권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6.11% 증가하여 전국 평균(10.6%)보다 4.49%p 낮음. 비수도권의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보다 2.5배가량 많은 15.33% 기록

- 전국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수도권이 2009년 58%에서 2014년 47%로 11%p가량 줄어들었으나, 비수도권은 34.4%에서 42.4%로 8%p가량 늘어남

- 동 기간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24백만 불 → 275백만 불, 108.4% 증가), 경북(446백만 불 → 2,397백만 불, 40%), 울산광역시(19백만 불 → 2,291백만 불, 38.7%) 순

[표 14] 최근 5년간(2009~2014) 시·도별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추이

(단위 : 신고금액, 백만 불,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2014 누계	2009~2014 연평균 증가율
전 국	11,484 (100.0)	13,071 (100.0)	13,673 (100.0)	16,286 (100.0)	14,548 (100.0)	19,003 (100.0)	88,065 (100.0)	10.60
수도권	6,640 (57.82)	4,855 (37.14)	6,180 (45.2)	10,553 (64.8)	9,819 (67.5)	8,933 (47.0)	46,980 (53.3)	6.11
서울	4,397 (38.3)	2,677 (20.5)	4,114 (30.1)	5,906 (36.3)	6,264 (43.1)	5,558 (29.2)	28,916 (32.8)	4.80
경기	1,323 (11.5)	1,664 (12.7)	1,426 (10.4)	1,217 (7.5)	1,543 (10.6)	1,495 (7.9)	8,668 (9.8)	2.47
인천	920 (8.0)	514 (3.9)	640 (4.7)	3,430 (21.1)	2,012 (13.8)	1,880 (9.9)	9,396 (10.7)	15.36
비수도권	3,949 (34.39)	5,707 (43.66)	5,130 (37.5)	3,720 (22.8)	3,545 (24.4)	8,056 (42.4)	30,107 (34.2)	15.33
미정	895 (7.8)	2,509 (19.2)	2,363 (17.3)	2,013 (12.4)	1,184 (8.1)	2,014 (10.6)	10,978 (12.5)	17.6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1~2014년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2006년 이후 직접투자 역조현상(해외직접투자 > 외국인직접투자)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2009~2014)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도권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제조업부문은 높음

- 지난 5년간 수도권외의 해외직접투자 금액 연평균 증가율은 2.02%로 전국 평균 3.59%와 비수도권 10.54%보다 각각 1.57%p, 8.52%p 낮은 반면, 제조업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이 12.53%로 전국 평균 10.02%, 비수도권 4.99%보다 2.33%p, 7.54%p 각각 높음
- 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내수침체, 높은 땅값, 고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 각종 수도권규제 등으로 인해 공장 신·증설 투자가 제약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분석

[표 15] 최근 5년간(2009~2014) 시·도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투자금액, 백만 불,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2014 누계	연평균 증가율
전 국	전 체	20,710 (100.0)	24,638 (100.0)	29,001 (100.0)	28,423 (100.0)	29,799 (100.0)	24,701 (100.0)	157,272 (100.0)	3.59
	제조업	4,496 (100.0)	7,145 (100.0)	9,698 (100.0)	8,583 (100.0)	9,241 (100.0)	7,250 (100.0)	46,413 (100.0)	10.02
수도권	전 체	17,376 (83.9)	21,182 (86.0)	20,891 (72.0)	20,614 (72.5)	23,492 (78.8)	19,201 (77.7)	122,756 (78.1)	2.02
	제조업	2,864 (63.7)	5,499 (77.0)	5,681 (58.6)	5,153 (60.0)	6,832 (73.9)	5,169 (71.3)	31,198 (67.2)	12.53
서울	전 체	11,321 (54.7)	12,940 (52.5)	13,183 (45.5)	14,132 (49.7)	17,051 (57.2)	15,429 (62.5)	84,056 (53.4)	6.39
	제조업	1,878 (41.8)	3,471 (48.6)	3,254 (33.5)	3,039 (35.4)	2,684 (29.0)	3,407 (47.0)	17,733 (38.2)	12.65
인천	전 체	1,026 (5.0)	455 (1.8)	965 (3.3)	848 (3.0)	418 (1.4)	422 (1.7)	4,134 (2.6)	▲16.28
	제조업	212 (4.7)	323 (4.5)	220 (2.3)	198 (2.3)	330 (3.6)	286 (3.9)	1,569 (3.4)	6.17
경기	전 체	5,029 (24.3)	7,787 (31.6)	6,743 (23.3)	5,634 (18.9)	6,023 (20.2)	3,350 (13.6)	34,566 (22.0)	▲7.80
	제조업	774 (17.2)	1,704 (23.9)	2,207 (22.8)	1,916 (22.3)	3,819 (41.3)	1,476 (20.4)	11,896 (25.6)	13.78
비수도권	전 체	3,333 (16.1)	3,456 (14.0)	8,110 (28.0)	7,808 (27.5)	6,308 (21.2)	5,500 (22.3)	34,515 (21.9)	10.54
	제조업	1,631 (36.3)	1,646 (23.0)	4,017 (41.4)	3,430 (40.0)	2,408 (26.1)	2,081 (28.7)	15,213 (32.8)	4.9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5.5)

- ▶ 이와 같이 2013년 이후 해외직접투자금액(ODI)과 외국인직접투자금액(FDI) 간의 격차는 축소되었으나, 수도권 규제 등 열악한 입지여건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쳐 수도권지역 제조업체의 자본 유출로 연결

- 지난 5년간(2009~2014)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액(880억 6,500만 불)보다 1.8배 이상 많은 투자금액이 해외직접투자(1,572억 7,200만 불)로 국외로 유출되었는데, 자본적자의 누계액(692억 700만 불)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발생(757억 7,600만 불)
- 따라서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수도권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글로벌 환경에서 수도권규제 등으로 기업이 적절한 투자시기를 놓칠 경우, 투자를 포기하거나, 국내투자자금이 세계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처로 옮겨감을 입증

(2) 수도권규제로 인한 외국인투자 유치 저해 사례⁸⁾

- ▶ 지속적이고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인해 국내기업의 공장 신·증설 투자도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저해하여 투자를 포기/철회하거나, 투자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레고랜드의 이천시 투자 철회 사례(1999년) : 자연보전권역의 관광지조성 면적제한 규제

레고랜드 운영권을 보유한 영국 멀린 그룹은 1996년부터 한국 진출을 추진, 1999년 덴마크 레고그룹은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일원지역에 60만㎡ 규모의 레고랜드 건립을 요청. 이천시는 1997.9~1998.10 기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관련부처 차관 및 광역단체장 회의(1999.8.17)에서 강원도의 반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합의에 실패. 결국,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이천에서 3만㎡ 규모가 넘는 관광지를 조성하지 못하도록 한 수도권규제 때문에 투자를 포기(1999년). 레고그룹은 이천지역의 투자를 포기하고, 2002년 봄에 독일 군츠부르크에 네 번째 레고랜드를 개장하여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 유치하고 있음

- GSK(글로벌 백신기업)의 화성시 투자 철회 사례 :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영국 미들섹스 지방의 브렌포드시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 Smith Kline, GSK)은 아시아 지역 전체에 공급할 백신공장을 한국에 세우기 위해 경기도에 인플루엔자 및 자궁경부암 백신 제조공장을 건립할 의향을 타진. 경기도는 화성시 장안면 수춘리 장안 첨단산업2단지 내 부지 6만여㎡를 확보해 GSK에 지원하기로 하고, 2006년 착공계획까지 합의하는 등 사실상 협약 체결만 남은 상황(투자규모 1~2억 불, 2007년 6월경 착공 희망). 그러나 독십자 본사가 위치한 전남 화순 제약단지에 GSK 공장이 들어설 것을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반대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더는 공장증설이 불가능하여 GSK는 결국 국내투자를 포기. 경기도는 공장총량제에 묶여 2010년까지는

8) 경기도(2006), “수도권규제 피해사례 현황”,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2008), “불량규제 풀어 대한민국 만든다”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GSK 공장 규모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GSK는 공장이 서울에서 멀면 타산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 투자는 거부. 결국 GSK는 차선책으로 고려했던 싱가포르를 아시아 공급 백신공장으로 선택 (2006년)하여 현재 싱가포르에서 백신을 생산 중

- 페어차일드코리아 부천시 투자 포기 사례 : 과밀억제권역 공장 증설 제한 규제

전력제어기와 전력용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미국계 투자기업인 페어차일드코리아는 2000년대 초 경기도 부천공장을 증설하려다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수도권규제에 막혀 투자처를 중국으로 전환. 2억 4백만 달러의 외국인자본이 이미 들어왔고, 수출 비중도 2001년에 매출액 대비 70%를 넘어서 이 회사는 2001년 3월 경기 부천시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지만, 페어차일드코리아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대기업으로 기존 공장 증설허용한도인 3,000㎡를 사용하였기에 생산증가의 필요성에도 더는 공장 증설을 할 수 없었음. 페어차일드코리아는 당초 한국에 7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2001년에 중국에 8천만 달러를 투자

- 유니버설스튜디오의 화성시 투자 지연 사례 : 토지사용료 등으로 인해 투자담보 상태

2007년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와 테마파크 · 골프장 · 컨벤션 센터 · 호텔 · 상가 등 복합 리조트시설을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조성하기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2007.11.27). 화성시 시화호 남쪽 간석지에 들어설 한국 유니버설스튜디오는 420만㎡로 미국 올랜드(180만㎡)와 로스앤젤레스(169만㎡) 유니버설스튜디오의 2배가 넘음. 예정대로 본계약을 맺게 되면 2012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약 5조 원의 국내외 자금이 투입. 경기도는 건설단계에서 5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조세수입 1,900억 원, 4만 1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고, 운영단계에서 매년 생산 2조 9천억 원, 고용 5만 8천 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지만, 토지 주인인 수자원공사가 5천억 원대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토지사용문제 때문에 테마파크 유치는 8년째 담보 상태. 경기도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2015년 6월 사업자 공모 진행 예정

- 서울시의 디즈니랜드 유치 실패 사례 : 개발제한구역 등 수도권규제

2003년부터 3년간 서울 인근에 공원 설립을 검토해 온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수도권규제 등으로 한국에서 공원부지를 찾지 못하고 중국 상하이로 이전. 디즈니랜드 공원 설립사업은 2003년 재정경제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한 후 2004년부터는 서울시가 과천 서울대공원 부지로 유치 추진. 하지만, 서울대공원 부지에 디즈니랜드를 세우려면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수도권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 간 협조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시의 적극성도 약해지면서 무산된 상황. 디즈니랜드가 들어서면 외국인 관광객 600만 ~ 1,000만 명 유치효과

- 3M 화성공장 착공 지연 사례 :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주 제한

글로벌 기업인 미국 3M은 화성 장안산업단지에 6천만 달러를 투자, LCD를 받게 해 주는 액정표시 장치용 프리즘키트 공장을 2005년 5월 26일 착공을 추진했으나,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착공 곤란. 수도권규제에 묶여 한국3M 화성공장은 경기도와 3M측이 2005년 3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17개월 만에 제품양산 개시. 한국3M사는 2006년 8월 24일에 화성 장안외국인투자지역에 착공한 LCD 휘도향상용 필름 공장 준공

-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인천공장 영종도 이전사례 : 자연보전권역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

H반도체내 건축물을 임대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싱가포르 자본 100%)는 2015년 6월 임대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2011년까지 이전할 공장 부지를 결정해야 하며,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부득이 중국으로 공장 이전을 검토. 2013년 7월 인천시에서 공장이전 후보지를 찾았지만, 자연보전권역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어렵게 되자, 중국 상하이 등지까지 공장이전 부지를 검토한 끝에 영종도 인천공항 물류단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택.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2단계 물류단지에 10만17㎡ 규모의 반도체 제조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를 2013년 7월 착공. 총 2,400억여 원을 들여 2015년 9월 완공 목표. 경기도와 인천시는 스태츠칩팩코리아 제2공장 인근 자연보전지역에 공장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지만,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영종도 이전으로 인천시는 2,300개의 일자리와 회사이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타격을 입음

3.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현황

▶ 최근 5년간 시·도별 제조업체수 증가추이와 경기도 소재기업의 비수도권으로 이전 현황의 경우, 수도권 인근인 충청도/강원도에서 기업이전과 제조업 신설이 많아 수도권의 연담화 현상⁹⁾이 심화

- 지난 10년 동안(2004~2014년) 경기도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545개사)의 63.7% (341개사)는 충청권(43.4%, 232개사), 강원도(20.4%, 109개사) 등 수도권 인접지역

- 이는 기업들이 수도권규제를 피하면서 물류비 절감과 인재 확보 등 비수도권 입지에 따른 기업경영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인접지역 이전을 선호¹⁰⁾함에서 비롯

9) '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

10) 박상원·전명진(2011)은 수도권에 인접한 주변지역(충북, 강원, 충남)에 이전 및 창업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주변지역 이전기업의 경우, 수도권규제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표 16] 경기도 소재기업의 지방이전 현황(2004~2014)

(단위 : 개사, %)

충남	충북	대전	강원	전북	전남	제주	대구	광주	기타	합계
138 (25.8)	67 (12.5)	27 (5.0)	109 (20.4)	75 (14.0)	52 (9.7)	22 (4.1)	13 (2.4)	10 (1.9)	22 (4.1)	535 (10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5)

- 특히 최근 5년간(2008~2013) 수도권외의 제조업체수 증가는 5%로 전국 평균(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나, 인접지역인 충남북도는 25%, 강원도는 18%로 높게 나타남

[표 17] 최근 5년간(2008~2013)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근 충청/강원지역 제조업 증가추이 비교

(단위 : 개사)

구 분	2008(A)	2013(B)	B-A	B/A
전 국	58,459	65,389	6,930	1.12
수 도 권	30,085	31,706	1,621	1.05
서울시	5,183	4,269	914	0.82
인천시	4,414	4,645	171	1.04
경기도	20,428	22,792	2,364	1.12
충 남	2,853	3,568	715	1.25
천안시	1,018	1,166	148	1.15
아산시	635	912	277	1.44
당진시	178	338	160	1.90
서산시	116	195	79	1.68
서천군	73	104	31	1.42
홍성군	67	97	30	1.45
충 북	2,074	2,590	516	1.25
제천시	71	116	45	1.63
괴산군	54	79	25	1.46
증평군	28	41	13	1.46
강 원	728	861	133	1.18
원주시	206	277	71	1.34
홍천군	30	40	10	1.33

주 : 1) 제조업체수 (종사자수 10명 이상)

2) 천안시는 통합시로서 천안군 (옛 천원군)과 통합(1995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시도(시군구)/산업분류별 주요지표(2008~2013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법적근거를 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에서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간접적으로 시·도별 지방이전, 공장 신·증설, 해외기업의 국내 유턴 현황을 파악

- 2011~2013년 동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부여되는 보조금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충남이며, 지방에서 새로운 기업을 신·증설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곳은 경북, 해외기업의 국내 복귀 시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북이 가장 많음
- 2011~2013년까지의 보조금 종류별 총 지원금액 및 지원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방기업의 신·증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금액 및 지원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방이전 기업은 감소되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가장 낮은 수준

[표 18] 연도별·지역별·지원대상별 국비지원 총액 및 지원건수(기업 수) 변화(2011~2013)¹¹⁾

(단위 : 억 원, 개)

구분	2011			2012			2013			합계
	이전	신·증설	복귀	이전	신·증설	복귀	이전	신·증설	복귀	
부산	78.2	-	-	14.3	65.2	-	13.7	11.9	-	183.3
	7(7)	-	-	1(1)	10(10)	-	1(1)	2(2)	-	21
대구	-	53.5	-	-	104.2	-	31.0	47.1	-	235.8
	-	16(16)	-	-	8(8)	-	3(2)	4(4)	-	31
광주	18.1	47.2	-	-	91.2	-	-	56.7	-	213.2
	2(1)	7(7)	-	-	11(11)	-	-	12(12)	-	32
대전	33.1	7.9	-	32.7	-	-	6.2	11.2	-	91.1
	7(4)	1(1)	-	3(2)	1(1)	-	3(2)	1(1)	-	16
울산	-	-	-	-	8.0	-	-	-	-	8
	-	-	-	-	4(4)	-	-	-	-	4
강원	43.8	-	-	17.0	5.5	-	80.8	16.0	-	163.1
	13(5)	-	-	9(3)	2(2)	-	4(4)	1(1)	-	29
충북	63.3	-	-	110.9	10.8	-	62.0	49.6	-	296.6
	11(5)	-	-	4(3)	4(4)	-	4(4)	3(3)	-	26
충남	327.5	1.3	-	233.4	2.1	-	82.1	10.7	7.2	664.3
	17(11)	1(1)	-	24(24)	1(1)	-	9(8)	1(1)	2(1)	55
전북	93.0	-	-	7.0	7.0	30.6	96.4	14.0	25.5	273.5
	6(3)	-	-	2(1)	2(2)	11(11)	4(2)	1(1)	10(9)	36

11)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2004), 지방 신·증설 투자(2011), 국내 복귀기업(2012)이 각각 포함

구분	2011			2012			2013			합계
	이전	신·증설	복귀	이전	신·증설	복귀	이전	신·증설	복귀	
전남	141.9	-	-	58.3	-	-	26.1	-	-	226.3
	16(11)	-	-	7(1)	-	-	4(4)	-	-	27
경북	15.0	115.6	-	-	93.8	-	7.5	153.4	24.2	409.5
	2(2)	15(15)	-	-	13(13)	-	3(2)	13(13)	3(2)	49
경남	4.3	17.9	-	-	66.4	-	43.1	122.2	-	253.9
	3(3)	5(5)	-	-	9(9)	-	3(2)	9(9)	-	29
제주	8.7	-	-	53.8	4.7	-	17.6	18.2	-	103
	2(0)	-	-	6(2)	1(1)	-	3(2)	3(3)	-	15
세종	-	-	-	-	-	-	25.6	-	-	25.6
	-	-	-	-	-	-	3(3)	-	-	3
합계	276.5	132.6	0	191.9	324.9	0	208.7	215.5	0	1,350.1
	86	45	-	56	66	11	44	50	15	37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

V.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의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현황 실증분석

1. 조사개요

- ▶ 본 조사의 목적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2008.10.30) 이후,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현재, 당초 투자계획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수도권규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모색
- ▶ 본 조사의 표본은 2009년 이후 경기도(132개사)와 전경련(81개사)의 설문조사 응답기업 중에서 양 기관 설문조사의 중복기업(52개사)을 제외한 161개사. 이 중 118개사 응답(응답률 : 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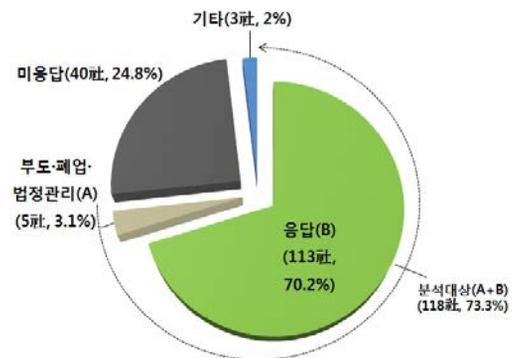
- 경기도 조사 : 2009년 1월, 경기도가 22개 시·군으로부터 취합한 226개 업체 중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계획 보류 기업(98개사)과 이후 신규 발굴 기업(34개사) 등 132개사

- 전경련 조사 : 2008년 11월(40개사), 2009년 6월(76개사) 등 두 차례 설문조사에 응답한 중 중복기업(35개사)을 제외한 81개사

- 응답현황 : 총 161개사 중 118개사(응답률 : 73.3%)

- 순수응답 : 113개사(70.2%)
- 부도·폐업·법정관리·법인해체 : 5개사
- 미응답 : 40개사
- 기 타 : 3개사

[그림 2]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변동 설문조사 응답현황



▶ 조사기간·조사방법

- 조사기간 : 2015.3.19.~4.14(27일간)
- 조사방법 : 전화·E-Mail
· 현장조사 병행

▶ 조사내용

- 2009년 이후 수립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의 2015년 3월 현재 상황(당초 투자 실현, 지연 후 투자 실현, 투자 포기/철회, 투자 보류 중/향후 투자 의향, 지방이전/신설, 해외 이전/신설)
- 투자적기 상실/지연 유형의 주된 사유
- 투자시기를 놓쳤거나 지연 등의 경우 경제적 손실 규모 및 유형
- 기타 기업 투자애로 및 정책개선사항 등

2. 설문조사 결과분석

(1)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현황

가.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의 국내투자 실현/미실현 여부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에서 투자시기를 놓쳐 투자를 실현하지 못했거나 보류 중인 기업(64개사/118개사, 54.2%)이 투자 실현(투자시기 지연 후 실현 포함) 기업(49개사/118개사, 49.2%)보다 많음

- 국내에서 투자계획의 실현 기업(58개사) : 투자시기에 ‘투자 실현’(30개사), ‘투자시기 지연 후 실현’(19개사), ‘지방으로 이전’(9개사) 순으로 응답했으며, 권역별로는 성장관리권역이 절반 이상(33개사, 56.9%), 자연보전권역(16개사, 25.9%), 과밀억제권역(10개사, 17.2%) 순
- 국내에서 투자시기를 놓쳐 투자계획의 미실현 기업(64개사) : ‘투자 보류 중, 향후 규제완화시 투자 의향’(38개사, 59.4%)이 가장 많고, ‘투자시기 상실하여 투자 포기/철회’(22개사, 34.4%), ‘해외로 공장이전/신설’(6개사, 9.4%) 순으로 응답했으며, 2개사 중 1개사가 자연보전권역(31개사, 48.4%)이었으며, 성장관리권역(20개사, 31.3%), 과밀억제권역(13개사, 20.3%) 순
- 2009년 수도권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던 기업의 변화유형으로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투자 보류 중’(38개사, 32.2%)인 업체가 가장 많았고, ‘투자 실현’(30개사, 25.4%), ‘투자철회’(22개사, 18.6%) 순이며,
 - 그 밖에 ‘지연 후 투자 실현’(19개사, 16.1%), ‘지방이전’(9개사, 7.6%), ‘해외이전’(5개사, 4.2%)

[표 19]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 업체수 변동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국내투자 실현(수도권, 지방 불문)				국내투자 미실현				합계
	투자 실현	자연 후 투자 실현	지방 이전	소계	투자 철회	투자 보류, 향후 투자	해외 이전	소계	
과밀 억제	4 (17.4)	4 (17.4)	2 (8.7)	10 (43.5)	5 (21.7)	7 (30.4)	1 (4.3)	13 (56.5)	23 (100.0)
성장 관리	21 (39.6)	8 (15.1)	4 (7.5)	33 (62.3)	10 (18.9)	8 (15.1)	2 (3.8)	20 (37.7)	53 (100.0)
자연 보전	5 (11.9)	7 (16.7)	4 (9.5)	15 (35.7)	7 (16.7)	23 (54.8)	2 (4.8)	31 (73.8)	42 (100.0)
합계	30 (25.4)	19 (16.1)	9 (7.6)	58 (49.2)	22 (18.6)	38 (32.2)	5 (4.2)	64 (54.2)	118 (100.0)

* 일부기업 복수응답

▶ 2009년 이후 118개 응답기업의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금액 집행 여부를 살펴보면, 당초 투자금액 15조 1,838억 원의 39.1%(5조 9,299억 원)를 국내에 투자 실현¹²⁾하여 1만 1,710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수도권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투자 보류, 투자계획 철회/포기, 해외이전으로 투자를 실현하지 못한 금액은 15.0%(2조 2,790억 원)¹³⁾이며, 이의 고용창출 예상인원은 1만 2,449명

- 동 기간 중 국내투자가 가장 많은 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2조 8,412억 원(47.9%), 자연보전권역은 2조 4,257억 원(40.9%), 과밀억제권역 6,630억 원(11.2%)
- 자연보전권역의 H개사(2조 1천억 원)의 투자금액을 제외할 경우, 자연보전권역의 투자금액은 3,257억 원으로 총투자금액(3조 8,299억 원)의 8.5%
- 국내투자 미실현금액(2조 2,789.5억 원)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1조 1,994억 원, 52.6%)이며, 과밀억제권역(5,954.5억 원, 26.1%), 성장관리권역(4,841억 원, 21.2%) 순

12) 지방이전(4,826억 원, 1,270명) 제외 시, 수도권 투자금액은 5조 4,473억 원(수도권의 고용창출은 1만 440명)

13) 국내에서 투자 실현된 금액(5조 9,299억 원)과 미실현금액(2조 2,790억 원)의 합계(8조 2,089억 원)은 당초 투자계획(15조 1,838억 원)의 54.1%를 차지하나, 이는 H개사 투자계획(9조 7,000억 원) 중 2015년 6월까지 2조 1천억 원만 반영되는 것에서 비롯. H개사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설비투자로 15조 원을 투자할 계획

[표 20] 당초계획 대비 국내투자 실현금액과 미실현금액 비교

(단위 : 개사, 억 원, %)

구분	당초계획(A)		국내투자 실현(B)			국내투자 미실현(C)			계(D=B+C)		
	투자금액	고용효과	업체수	투자금액	고용효과	업체수	투자금액	고용효과	업체수	투자금액	고용효과
과밀 억제	12,237 (100.0)	12,296 (100.0)	10	6,630 (54.7)	3,078 (25.0)	13	5,954.5 (48.7)	8,019 (65.2)	23	12,584.5	11,097
성장 관리	28,843 (100.0)	10,261 (100.0)	33	28,412 (98.5)	7,297 (71.1)	20	4,841 (16.8)	2,258 (22.0)	53	33,253	9,555
자연 보전	110,758 (100.0)	6,526 (100.0)	16	24,257 (21.9)	1,335 (20.5)	31	11,994 (10.8)	2,277 (34.9)	42	36,251	3,612
합계	151,838 (100.0)	29,083 (100.0)	58	59,299 (39.1)	11,710 (40.3)	64	22,789.5 (15.0)	12,554 (43.2)	118	82,088.5	24,264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을 위해 5조 4,473억 원이 투자되어 1만 440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2009년 6월 전경련 조사(41개 기업, 3조 4,430억 원 투자, 1만 184명 고용창출)에 비해 투자금액은 58.2%(2조 43억 원) 증가
 - 이는 2009년 6월, 전경련 조사 시 투자불가능으로 분류된 H개사(2조 1천억 원)와 S개사(2,500억 원)가 금번 조사에서 투자 실현(자연 후 실현 포함)으로 집계된 것에서 비롯
 - 투자금액이 큰 H사를 제외할 경우, 총 3조 3,473억 원(48개사)을 투자하여 2009년 6월 조사에서 파악된 3조 4,430억 원(41개사)의 97.2% 수준으로 비슷한 규모 유지
- 위와 같이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기업의 투자 실현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나, 제한적이고,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 조치 미시행, 토지/환경 등 중복규제로 인해 상당 부분의 투자가 미실현으로 남아 있음

[표 21]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권역별 투자실현액 전경련-환경연 조사 비교

(단위 : 억 원, 명)

구분	2009년 6월전경련 조사			2015년 4월 환경연 조사*			증감 비교(%)	
	업체수	투자금액	고용효과	업체수	투자금액	고용효과	투자금액	고용효과
과밀 억제	10	6,979	3,797	8	4,030	2,278	△2,949 (△42.3)	233 (6.1)
성장 관리	26	22,419	6,077	29	27,242	7,087	4,823 (21.5)	1,010 (16.6)
자연 보전	5	5,032	310	12	23,201	1,075	18,169 (261.7)	765 (146.8)
합계	41	34,430	10,184	49	54,473	10,440	20,043 (58.2)	256 (2.5)

나.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의 변동유형(투자금액, 고용효과)

-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로 인한 수도권에서의 공장입지 투자효과는 당초 투자계획 (15조 1,838억 원)의 35.9%(5조 4,473억 원) 수준으로 규제 완화로 인한 대폭적 투자 실현 증가는 없음
 - 투자행태 변동으로 투자 실현(33.2%, 2조 7,291억 원), 지연 후 투자 실현(33.1%, 2조 7,182억 원), 투자 보류(16.1%, 1조 3,186.5억 원), 투자 철회(9.8%, 8,073억 원) 순
- ▶ 반면, 제한적인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 지속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투자계획을 철회했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28개사, 9,603억 원)가 지방이전(9개사, 4,826억 원) 보다 2배 가량 많음
 - 투자 철회(8,073억 원, 9,008명)가 가장 많은 권역은 과밀억제권역(2,749억 원, 7,546명)이며, 성장관리권역(3,321억 원, 1,090명), 자연보전권역(2,003억 원, 372명) 순
 - 수도권규제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9개사)의 이전지역 분포는 경기도 인접지역인 충청도와 강원도(8개사), 기타 지역(경북) 1개사
 - 따라서 수도권규제 지속은 기업의 지방이전보다 적정 투자시기를 놓쳐 투자계획 철회하거나, 불가피하게 해외이전을 선호하는 등 ‘규제의 풍선효과’가 없음을 입증
- ▶ 공장입지 투자가 보류 중(1조 3,186.5억 원, 2,876명)인 경우, 자연보전권역이 70%가량 (9,401억 원, 1,685명)이며, 과밀억제권역(3,165.5억 원, 423명), 성장관리권역(620억 원, 768명) 순

[표 22]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의 변동유형

(단위: 억 원, 명, %)

	투자실현		지연후 투자실현		투자보류중, 향후 투자의향	
	투자금액	고용효과	투자금액	고용효과	투자금액	고용효과
과밀 억제	3,425 (27.2)	2,200 (19.8)	605 (4.8)	78 (0.7)	3,165.5 (25.2)	423 (3.8)
성장 관리	23,235 (69.9)	6,072 (63.6)	4,007 (12.1)	1,015 (10.6)	620 (1.9)	768 (8.0)
자연 보전	631 (1.7)	180 (5.0)	22,570 (62.3)	895 (24.8)	9,401 (25.9)	1,685 (46.7)
계	27,291 (33.2)	8,452 (34.8)	27,182 (33.1)	1,988 (8.2)	13,186.5 (16.1)	2,876 (11.9)

	지방이전/신설		투자 철회		해외이전/신설		합계	
	투자금액	고용효과	투자금액	고용효과	투자금액	고용효과	투자금액	고용효과
과밀 억제	2,600 (20.7)	800 (7.2)	2,749 (21.8)	7,546 (68.0)	40 (0.3)	50 (0.5)	12,584.5 (100.0)	11,097 (100.0)
성장 관리	1,170 (3.5)	210 (2.2)	3,321 (10.0)	1,090 (11.4)	900 (2.7)	400 (4.2)	33,253 (100.0)	9,555 (100.0)
자연 보전	1,056 (2.9)	260 (7.2)	2,003 (5.5)	372 (10.3)	590 (1.6)	220 (6.1)	36,251 (100.0)	3,612 (100.0)
계	4,826 (5.9)	1,270 (5.2)	8,073 (9.8)	9,008 (37.1)	1,530 (1.9)	670 (2.8)	82,088.5 (100.0)	24,264 (100.0)

(2)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

▶ 2009년 이후, 62개 기업은 수도권 입지규제¹⁴⁾ 등으로 인해 투자계획 철회, 투자 보류, 투자시기 지연, 지방이전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금융비용 등 경제적 총 손실액은 3조 3,329억 원이며, 1만 2,0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없어졌다고 응답

- 투자적기를 놓쳐 투자 보류, 투자 철회 또는 지방이전, 해외이전으로 인한 투자손실액은 2조 2,863.5억 원이며, 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시장개척 차질, 매출 및 영업이익 손실 등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손실 규모는 1조 466억 원

- 권역별로는 자연보전권역이 총 손실 규모의 2/3(67.2%) 수준인 2조 2,398억 원이며, 과밀억제권역은 7,990억 원, 성장관리권역은 2,941억 원
- 유형별로는 ‘투자 보류’가 32개사(46.8%, 1조 5,611억 원)로 가장 많고, ‘지연 후 투자 실현’은 11개사(23.6%, 7,851억 원), ‘투자계획 철회’는 9개사(14.4%, 4,797억 원) 순

14) 수도권 입지규제에는 순수 수도권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외에 그린벨트 규제 및 연접제한규정(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등에 의한 토지관련 규제가 포함

[표 23] 2009년 이후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한 수도권 기업의 경제적 손실규모

(단위: 억 원, 명, %)

	지연 후 투자 실현	지방이전		투자 철회		투자 보류중, 향후 규제 완화 시 투자 의향						해외이전		합계		
	금융비용 외	투자금액	고용효과	투자금액	고용효과	투자금액	금융 ¹⁵⁾ 비용	기타손실 ¹⁶⁾	소계	고용효과	투자금액	고용효과	업체	경제적손실	고용효과	
과밀억제	30,845 (0.4)	2,000 (25.0)	700 (8.2)	2,319 (29.0)	7,436 (86.9)	3,165.5 (39.6)	474,825 (5.9)	0 (0.0)	3,640,325 (45.6)	423 (5.0)	0 (0.0)	0 (0.0)	13	7,990.17 (100.0)	8,559 (100.0)	
성장관리	132.15 (4.5)	1,130 (38.4)	190 (15.2)	745 (25.3)	310 (24.7)	490 (16.7)	73.5 (2.5)	70 (2.4)	633.5 (21.5)	652 (52.0)	300 (10.2)	100 (8.0)	16	2,940.65 (100.0)	1,253 (100.0)	
자연보전	7,687.775 (34.3)	1,050 (4.7)	260 (11.6)	1,733 (7.7)	152 (6.8)	9,341 (41.7)	1,413.4 (6.3)	583 (2.6)	11,337.4 (50.6)	1,615 (71.9)	590 (2.6)	220 (9.8)	33	22,398.175 (100.0)	2,247 (100.0)	
합계	7,850.77 (23.6)	4,180 (12.5)	1,150 (9.5)	4,797 (14.4)	7,898 (65.5)	12,996.5 (39.0)	1,961.725 (5.9)	653 (2.0)	15,611,225 (46.8)	2,691 (22.3)	890 (2.7)	320 (2.7)	62	33,328.995 (100.0)	12,059 (100.0)	

▶ 2009년 이후, 순수한 수도권규제만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52개 기업을 합쳐 총 2조 6,609억 원이며, 3,83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없어졌다고 응답

- 투자적기를 놓쳐 투자 보류, 투자 철회 또는 지방이전, 해외이전으로 인한 투자손실액은 1조 6,618억 원이며, 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시장개척 차질, 매출 및 영업이익의 손실 등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손실 규모는 9,992억 원
- 자연보전권역은 2조 2,398억 원으로 10개 기업 중 8개 기업(84.2%)이 해당되며, 과밀억제 권역은 2,399억 원, 성장관리권역은 1,812억 원
- 유형별로는 '투자 보류'가 27개사로 가장 많고(45.0%, 1조 2,009억 원), '지연 후 투자 실현'은 10개사(29.5%, 7,847억 원), '지방이전'은 7개사(15.7%, 4,180억 원), '투자계획 철회'는 6개사(7.5%, 1,983억 원) 순

15) 금융비용은 해당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용, 밝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계획된 투자금액에 지연 또는 보류된 기간만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곱하여 이를 합산한 수치(연도 말 기준금리: 2009년(2.00), 2010년(2.50), 2011년(3.25), 2012년(2.75), 2013년(2.50), 2014년(2.00))

16) 기타 손실은 7개 응답기업이 재무건전성 악화, 시장개척 차질, 매출과 영업이익 손해, 부품 및 납품기회 상실, 시설자동화 지연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금액을 단순합산. 이러한 손실비용은 계량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총 응답기업(62개사) 중 7개사만이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으며, 나머지 기업(55개사)을 합할 경우 훨씬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추가적으로 5,131.5억 원의 손실 발생)

[표 24] 2009년 이후 수도권규제로 인한 수도권 기업의 경제적 손실 규모

(단위: 억 원, 명, %)

	지연 후 투자 실현			지방이전		투자 철회		투자 보류 중, 향후 규제 완화 시 투자 의향					해외이전		합계		
	금융	투자	고용	투자	고용	투자	금융	기타	소계	고용	투자	고용	업체	투자	고용		
과밀	30,845 (1.3)	2,000 (83.4)	700 (55.0)	100 (4.2)	500 (39.3)	233.5 (9.7)	35,025 (1.5)	0 (0.0)	268,525 (11.2)	73 (5.7)	0	0	9	2,399.37 (100.0)	1,273 (100.0)		
성장	128.25 (7.1)	1,130 (62.4)	190 (60.1)	150 (8.3)	0	290 (16.0)	43.5 (2.4)	70 (3.9)	403.5 (22.3)	123 (39.3)	0	0	10	1,811.75 (100.0)	313 (100.0)		
자연	7,687.775 (34.3)	1,050 (4.7)	260 (11.6)	1,733 (7.7)	152 (6.8)	9,341 (41.7)	1,413.4 (6.3)	583 (2.6)	11,337.4 (50.6)	1,615 (71.9)	590 (2.6)	220 (9.8)	33	22,398.175 (100.0)	2,247 (100.0)		
합계	7,846.87 (29.5)	4,180 (15.7)	1,150 (30.0)	1,983 (7.5)	652 (17.0)	9,864.5 (37.1)	1,491.925 (5.6)	653 (2.5)	12,009.425 (45.1)	1,811 (47.2)	590 (2.2)	220 (5.7)	52	26,609.295 (100.0)	3,833 (100.0)		

(3)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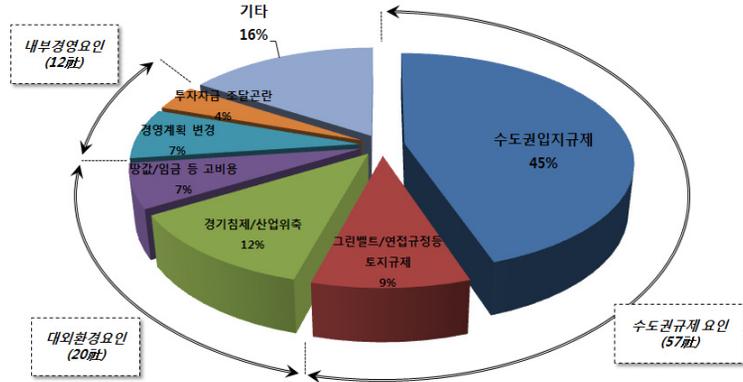
- ▶ 응답기업(89개사)은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 주요 요인으로 2곳 중 1곳 (54.2% 58건/107건) 이상이 수도권 입지규제 등을 지적. 경기침체·관련산업 위축, 높은 땅값과 고임금 등 대외환경요인은 18.7%, 경영계획 변경과 자금조달 곤란 등 내부경영 요인은 11.2% 순으로 꼽음
 - ‘수도권규제’(44.9%), ‘경기침체·관련산업 위축’(12.1%), ‘그린벨트·연접규정 등 토지규제’(9.3%), ‘신사업 추진 등 경영계획 변경’(7.5%), ‘높은 땅값/고임금 등 고비용구조’(6.5%)
 - 수도권규제가 저해요인이라는 응답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이 가장 많고(69.0%), 과밀역제 권역(34.6%), 성장관리권역(25.6%) 순

[표 25]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주요 원인

(단위: 개사, %)

구분	수도권규제 등			대외환경요인			내부경영요인			기타	합계
	수도권 입지규제	그린벨트/연접규정 등 토지규제	소계	경기침체/산업위축	땅값/임금 등 고비용	소계	경영계획 변경	투자자금 조달 곤란	소계		
과밀 (20개사)	9 (34.6)	4 (15.4)	13 (50.0)	2 (7.7)	3 (11.5)	5 (19.2)	3 (11.5)	2 (7.7)	5 (19.2)	3 (11.5)	26 (100.0)
성장 (32개사)	10 (25.6)	6 (15.4)	16 (41.0)	5 (12.8)	2 (5.1)	7 (17.9)	5 (12.8)	1 (2.6)	6 (15.4)	10 (25.6)	39 (100.0)
자연 (37개사)	29 (69.0)	0 (0.0)	28 (66.7)	6 (14.3)	2 (4.8)	8 (19.0)	0 (0.0)	1 (2.4)	1 (2.4)	4 (9.5)	42 (100.0)
합계 (89개사)	48 (44.9)	10 (9.3)	57 (53.3)	13 (12.1)	7 (6.5)	20 (18.7)	8 (7.5)	4 (3.7)	12 (11.2)	17 (15.9)	107 (100.0)

[그림 3]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주요 원인



(4)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유형

- ▶ 수도권 규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응답기업들은 ‘투자 및 고용창출 기회 감소’(26.1%), 공장시설 효율화가 지연 등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곤란’(25.7%), ‘매출과 영업이익 손해/내수·수출시장 개척 차질’(19.2%), ‘기술개발 및 품질경쟁력 저하’(16.2%) 순으로 경제적 손실이 많다고 지적
- 응답빈도는 자연보전권역(55.3%), 성장관리권역(24.8%), 과밀억제권역(20.2%) 순

[표 26] 수도권 공장 신·증설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경제적 손실유형(I)

(단위 : 응답건수, %)

항목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계
• 투자 및 고용 창출기회 감소/상실	12	20	34	66 (26.1)
• 매출과 영업이익 손해/내수·수출시장 개척 차질	10	11	27	49 (19.2)
• 생산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곤란	14	13	38	65 (25.7)
- 시설자동화·현대화 어려움/안전사고 위험 노출	4	2	23	29
- 중복투자로 유지관리비·물류비·공장이전비 증가	2	5	6	13
- 부지매입 등 금융비용 증가/재무건전성 악화	8	6	9	23
• 기술개발과 품질경쟁력 저하	9	8	24	41 (16.2)

항목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계
- 기술개발 지연/신기술 시스템 전환 차질	4	5	11	20
- 제품 적기출시 애로	2	1	7	10
- 안정적 부품수급 및 납품기회 상실	2	1	4	7
- 클러스터 형성효과 저하	1	1	2	4
• 신성장 동력 창출 어려움	6	10	17	33 (13.0)
-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곤란/신성장 아이템 발굴 애로	5	4	10	19
- 인력유치 차질, 핵심역량 분산 등	1	6	7	14
합계	51 (20.2)	63 (24.8)	140 (55.3)	253 (100.0)

▶ 경제적 손실 발생유형의 경우, ‘투자계획 보류 중’(152건, 59.8%)이 가장 많고, ‘투자시기 지연 후 투자 실현’(44건, 17.3%), ‘투자시기 놓쳐 투자 철회’(26건, 10.2%), ‘지방으로 공장 이전’(26건, 10.2%) 순

- 당초 계획보다 투자시기 지연 후 투자 실현 : ‘투자·고용창출 기회 감소’(13건), ‘매출·영업이익 손해/시장개척 차질’(12건), ‘부지매입의 금융비용 부담/재무건전성 악화’(11건) 등
- 투자시기 놓쳐 투자계획 철회 : ‘투자·고용창출 기회 상실’(14건), ‘신성장 아이템 발굴 애로/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차질’(4건), ‘매출·영업이익 손해/시장개척 차질’(3건) 등
- 투자계획 보류 중 : ‘투자·고용창출 기회 상실’(35건), ‘매출과 영업이익의 손해/시장개척 차질’(34건), ‘시설자동화·현대화 곤란’(28건), ‘신성장 아이템 발굴/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차질’(15건) 등
- 공장 지방이전 : ‘중복투자로 유지관리비/물류비/이전비 증가’(10건), ‘인력유치 차질’(6건) 등

[표 27]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유형(Ⅱ)

(단위 : 응답건수)

구분	항 목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합계
당초계획보다 투자시기 지연 후 투자 실현	• 투자 및 고용 창출기회 감소	1	6	6	13
	• 매출과 영업이익의 손해/시장개척 차질	0	7	5	12
	• 기술개발 지연 등	0	5	3	8
	• 부지매입 등 금융비용 증가/재무건전성 악화	5	3	3	11
	소계	6	21	17	44
투자시기를	• 투자 및 고용창출 기회 상실	4	5	5	14

구분	항 목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합계
놓쳐 투자계획 철취	• 매출과 영업이익의 손해/시장개척 차질	0	2	1	3
	• 기술개발 지연	1	0	0	1
	• 시설자동화·현대화 곤란	0	0	1	1
	• 신성장 아이템 발굴/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차질	3	1	0	4
	• 부품 수급 및 납품기회 상실	1	0	0	1
	• 부지매입 등 금융비용/재무건전성 악화	2	0	0	2
	소계	11	8	7	26
투자계획 보류 중, 향후 규제 완화 시 투자 의향	• 투자 및 고용창출 기회 감소	6	8	21	35
	• 매출과 영업이익의 손해/시장개척 차질	10	3	21	34
	• 기술개발 지연/신기술 시스템 전환 차질	3	3	8	14
	• 제품 적기출시 애로	2	1	7	10
	• 시설 자동화·현대화 곤란/안전사고 위험 노출	4	2	22	28
	• 신성장 아이템 발굴/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차질	2	3	10	15
	• 부품 수급 및 납품기회 상실	1	1	2	4
	• 부지매입 등 금융비용 등	2	3	7	12
	소계	30	24	98	152
지방으로 공장 이전/신설	• 중복투자로 유지관리비/물류비/이전비 증가	1	3	6	10
	• 클러스터 형성효과 저하	1	1	2	4
	• 부품 수급 및 납품기회 상실	0	0	2	2
	• 인력유치 차질	1	2	3	6
	• 핵심역량 분산 등	0	1	3	4
	소계	3	7	16	26
해외로 공장 이전/신설	• 투자 및 고용창출 기회 상실	1	1	2	4
	• 중복투자로 유지관리비 증가	0	1	0	1
	• 물류비용 증가	0	1	0	1
	소계	1	3	2	6
합계		51	63	140	254

(5) 수도권규제로 인한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의 주요 사례

- ▶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법 등 수도권 관련규제 이외에 국토계획법, 환경정책 기본법, 개발제한구역특례법 등으로 중첩적으로 규제되어 공장입지 투자계획을 포기하거나 보류하게 됨
 - 특히 과밀억제권역은 개발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은 건폐율/용적률 규제와 폐수배출 규제, 자연보전권역은 수질관련 환경 규제/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이 기업투자를 제약

[표 28] 수도권규제로 인해 투자포기/지방이전/해외이전 등을 검토 중인 주요 사례

권역	업체명	수도권규제로 인한 투자애로 사례 주요 내용
과밀 억제	K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시에서 핸드폰 백라이트 필름 가공기계를 제조하는 K사는 2008년부터 공장증설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수도권규제와 환경규제 때문에 6~7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 실현이 지연 • K사 구리공장 바로 옆 (743m², 240평) 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장증설 투자(50억 원, 10명)를 하려 해도 구역해제가 되지 않아 불가능 • 구리시청에 수년간 민원을 넣고 시청에서 수차례 다녀갔지만, 7년 동안 나아진 것은 거의 없음 • 이에 K사는 지방이전을 고려했으나, 공장 특성상 기본적으로 20~30명 정도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하므로 지방에서 고급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난감한 실정 • 회사를 아예 동남아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중이며, 매년 수도권규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기대마저도 포기한 상황
	W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에 공장 신·증설 계획이 있었으나, 하남시에서 한강유역 몇 km 이내(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7km까지는 공장의 설립 전면 제한, 7~15km까지는 엄격한 제한조건에 승인지역, 수도법 § 7의2, 2010.5.25. 개정)는 ‘모든 품목’ 공장 신·증설의 공장등록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공장 신 설을 하지 못함 • 하남시가 한강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W사는 물을 끌어다 쓸 뿐, 오폐수를 방출하지 않음에도 ‘모든 품목’의 공장에 대해 공장등록허가를 규제하여 기계와 설비투자에 8.5억 원가량 손해 발생 • 충청지역으로 공장이전을 고려했지만, W사는 티슈공장이다 보니 수도권 입지가 절실하여 지방으로 공장이전은 불가능한 상태
성장 관리	B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에서 50여 년간 식품첨가물(향료 외)과 원료의약품을 전문으로 제조 판매하는 B개사는 화성시로 이전한 지 약 30년(1987년 이전)이 지나 건물시설 노후화 • B사 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약 2년 전에 세웠던 제조시설의 증설계획(약 100억 원, 10명 고용창출)이 화학업종 등록으로 인해 수도권규제와 환경규제 등으로 제한되어 투자가 지연. 특히, 환경규제로 인해 폐수배출량(1일 50톤)이 제한되어 폐수량 관리 및 제조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B사는 지방이나 해외로의 공장이전을 검토 중이나, 공장이전비와 물류비용 등의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전은 엄두도 못 냄
	D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사는 2014년에 2개 자회사(D비전, I티스)를 설립하였는데, 화성시에서 주변 지역에 공장지대가 없고, 주변경관을 해치며, 녹지훼손을 이유(환경규제)로 공장부지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공장 증축에 어려움 • 특히 D사 자회사인 I티스의 경우, 2014년 6월 첨단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었으나,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권역	업체명	수도권규제로 인한 투자애로 사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가 각 기관의 환경 담당 공무원을 잘 지도하여 해당 환경규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마음가짐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람
	S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사는 반도체 부품제조업체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신성장동력 중 LED부문(사파이어웨이퍼 제조)을 이천공장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수도권 덩어리 규제로 인하여 2010년 6월 폐수 비배출 제조공정 증설조건으로 부분 투자를 하게 되었고, 2013년 12월 말 동 투자사업 철회 시 까지 약 1,700억 원 투자 운영비 및 150여 명을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였음 • 하지만, 자연보전권역 대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와 폐수 비배출시설에 한정된 부분 증설의 영향으로 투자적기를 놓쳐 경쟁력을 상실 • 본 사업장에 확장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2013년 말 사파이어웨이퍼사업을 1차로 전면 철회(17,000억 원 및 150명 고용 손실)하였고, 연이어 2014년 9월 말에 기존 반도체웨이퍼 사업부문까지 철수 결정. 이에 이천공장의 모든 사업을 전면 종료하는 극도의 기업생존전략을 강구하게 되었음
자연보전	N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지역의 수도권규제(공장증축규제, 환경규제 등)로 N사 이천공장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공장 증축이 어려운 상황. 제조시설도 현재 면적(5,600㎡)의 1.5배 이상(8,500㎡)을 증설해야 하나, 자연보전권역에서 1,000㎡ 이내로 증설이 제한되어 공장 신·증설 투자(약 500억 원, 100명)를 전혀 진행하지 못함 • 특히, N사는 제약회사인 만큼 폐수 방출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애로가 많음 • 지난 6년 동안 이천지역에서 기계 교체만 시행하였고, 공장 신·증설 투자는 안산(반월 공장), 천안, 대구 달성에서만 증설투자가 이루어짐
	C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사 광주공장은 주문량 증가와 업종전환(스낵→음료)으로 제조시설의 증설(부지 약 5,200㎡ 증가 : 현행 58,805㎡→64,005㎡, 제조시설 약 4,900㎡ 증가)이 필요하나, 기존 공장 증설 허용면적이 1,000㎡로 제한되고, 공업용지조성면적도 6만㎡ 이내로 제약되는 등 수정법상 부지 증설이 불가한 가운데, 2002년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돼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되는 건축규제 • 이러한 중복규제로 창고시설이 부족하여 비효율적인 물류배송에 따라 연간 4억 6천만 원 이상 영업 손실이 발생, 생산 차질을 감안하면 영업손실은 더욱 커짐 • C사 광주공장은 건축 및 폐수 제한으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기타 공장(남양주, 김해, 논산)으로 생산 품목을 이전하여 생산량 및 종업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투자계획에서도 계속 제외되고 있는 실정



VI.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시사점

- ▶ 최근 5~6년간 전국 제조업체의 공장용지면적 증감추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의 변동추이,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으로 이전 현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수도권규제 완화/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였음
-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지방경제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오히려 수도권 규제 지속과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Inward FDI(외국인직접투자)보다 Outward FDI(해외직접투자)가 3배가량 많아 수도권의 제조업 위축 현상이 빠르게 진행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에도 지난 6년간(2008~2014) 비수도권의 공장용지면적 합산과 총공장등록건수의 연평균 증가율(3.68%, 4.86%)은 수도권(2.58%, 3.74%)보다 높은 반면, 수도권은 비수도권은 물론 전국 평균(3.58%, 4.38%)보다 낮음
 - 오히려 수도권은 수도권규제 등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낮고,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높아 제조업의 자본 유출이 심각한 상황
 - 한국 FDI 연평균 증가율(%) : 수도권(6.11) < 전국 평균(10.6) < 비수도권 (15.33)
 - 한국 제조업체 ODI 연평균 증가율(%) : 수도권(12.53) > 전국 평균(10.02) > 비수도권(4.99)
 - 지난 5년간 한국의 자본 유출 누계(해외직접투자)는 자본 유입 누계(외국인직접투자)보다 1.8배 많음(692억 7백만 불). 이의 대부분은 수도권(757억 76백만 불)에서 발생
 - 글로벌 환경에서 수도권규제 등으로 기업이 적절한 투자시기를 놓칠 경우, 투자를 포기하거나, 국내투자자금이 세계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처로 옮겨가는 것을 입증

[표 29] 최근 5년간(2009~2014) 외국인직접투자자와 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비교

(단위 : 투자금액, 백만 불, %)

구 분	외국인직접투자(FDI)(A)	해외직접투자(ODI)(B)	비교(A-B)	B/A
전 국	88,065	157,272	△69,207	1.79
수 도 권	46,980	122,756	△75,776	2.61
비수도권	30,107	34,515	△4,408	1.15

- ▶ 시·도별 제조업체수 증가추이와 경기도 소재기업의 비수도권으로 이전 현황 분석결과, 수도권규제는 지역균형발전보다 수도권지역의 연담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지난 10년간(2004~2014)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경기도 소재기업의 63.7%는 충청권(43.4%) 과 강원도(20.4%)등 수도권 인접지역. 최근 5년간(2008~2013년) 수도권의 제조업체수 증가는 5%로, 충청도(25%), 강원도(18%)에 비해 4~5배가량 적음
-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기업투자 실현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나, 그 정도는 제한적이고, 자연보전권역의 완화조치 미시행, 토지/환경 등 중복규제는 여전히 투자 미실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로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 효과는 당초 투자계획(15조 1,838억 원)의 35.9%(5조 4,473억 원) 수준. 대폭적인 투자 실현 증가는 없음¹⁷⁾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 실현(지연 후 실현 포함) 업체수는 응답기업의 41.5%(49개사), 투자금액은 5조 4,473억 원(고용효과 1만 440명), 당초계획(3조 4,430억 원)보다 58.2% 증가. 투자 미실현 업체수는 응답기업의 54.2% (64개사), 미실현 금액은 2조 2,790억 원(고용효과 1만 2,554명)으로 집계
 - 투자 실현은 성장관리권역(33개사, 2조 8,412억 원이며, 투자 미실현은 자연보전권역(31개사), 1조 1,994억 원으로 자연보전권역이 규제로 인한 기업투자의 애로가 많음
- ▶ 반면, 수도권규제의 지속은 기업공장의 지방이전보다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놓쳐 투자를 포기/철회하거나, 불가피하게 해외로 공장이전을 선호하는 등 ‘규제의 풍선효과’가 미미
 - 제한적인 규제 완화와 수도권규제 지속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해외 공장이전(28개사, 9,603억 원)이 지방이전(10개사, 4,826억 원)보다 2배가량 많음
 - 특히 수도권규제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9개사)의 이전지역 분포는 경기도 인접지역인 충청/강원도(8개사)로 균형발전 효과 반감
 - 투자 철회(8,073억 원, 9,008명)가 가장 많은 권역은 과밀억제권역(2,749억 원, 7,546명)이며, 성장관리권역(3,321억 원, 1,090명), 자연보전권역(2,003억 원, 372명) 순
- ▶ 2009년 이후, 62개 기업은 수도권규제 등으로 투자적기를 놓쳐 발생한 미투자금액, 금융비용 등 경제적 손실 규모는 3조 3,329억 원이며, 1만 2,0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음

17) 경기도(2011)는 2011년 9월 기준, 수도권규제 개선으로 417개 기업 67조 504억 원의 투자와 14만 7천 개의 일자리가 기대된다고 밝힘. 여기에는 공장 신·증설 투자 이외에 정비발전지구 도입에 따른 효과가 포함

- 투자적기를 놓쳐 투자 보류, 투자 철회 등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 규모는 2조 2,863.5억 원, 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등 간접적 손실 규모는 1조 466억 원이나, 응답하지 않은 기업들의 기타 손실까지 추산할 경우, 직·간접적 손실 규모는 3조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¹⁸⁾

- ▶ 응답기업(89개사)은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적기 상실/지연 주요 요인으로 2곳 중 1곳 (54.2%, 58건/107건) 이상이 수도권 입지구제 등을 지적. 경기침체·관련산업 위축, 높은 땅값과 고임금 등 대외환경요인은 18.7%, 경영계획 변경과 자금조달 곤란 등 내부경영 요인은 11.2% 순으로 꼽음

2. 정책과제

- ▶ 지난 6년간(2009~2014)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로 인한 주요 기업의 수도권 공장 입지 투자변동 분석결과,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수도권규제는 기업공장의 지방이전보다는 투자 타이밍을 놓쳐 투자계획 포기 또는 해외 공장이전이 2배가량 높아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

- 기존 공장 증설, 첨단업종 신설 등 제한된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방경제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오히려 수도권규제 지속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자본 유입보다 자본 유출이 많으며, 지방이전 효과로 수도권 연담화 현상 심화 등 득보다 실이 큼

- ▶ 글로벌화 진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도시 및 지역경제권이 형성되어 국가 간 경쟁 또는 국내지역 간 경쟁구도가 아닌 세계 대도시권(Mega City Region, 메가시티)과의 경쟁관계로 재편됨에 따라 수도권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므로 지난 30여 년간 균형발전 논리로 지속된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책을 지방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상생발전전략¹⁹⁾으로 국토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프랑스 정부는 2009년 4월, 수도권 파리와 인접지역인 일드프랑스를 통합 발전시켜 파리의 광역화를 통한 명실상부한 수도권을 만드는 ‘그랑파리(Le Grand Paris)’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영국 정부도 대도시권 성장전략으로 광역권정책과 런던성장정책을 추진 중²⁰⁾

18) 투자 보류 중에 간접적 손실이 있다고 응답한 7개사의 총손실액은 653억 원(1사당 93.3억 원)으로 이를 밝히지 않은 나머지 기업(55개사)을 1사당 평균으로 단순합산할 경우, 5,131.5억 원 규모로 추정

19) 신원득 외(2012)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서는제로섬 게임의 이분적인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두 지역의 호혜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자생력 제고와 동력원의 확충’, ‘고품질 삶의 질 역량의 제고’, ‘협력적·분업적 영역의 개척’ 등을 제시하고 있다.(수도권-지방 간의 상생발전전략, 경기개발연구원)

- 한국은 중국, 일본과 경쟁구도가 형성되는데, 일본은 동경권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국제화와 세계도시기능의 재편성’을 제시, 중국은 ‘징진지 협동발전계획요강²¹⁾’을 통과시켜,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지저우(冀州) 등 수도권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
- OECD는 “변영은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며, 정책입안자들은 경제성장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경제활동을 너무 많이, 너무 멀리, 혹은 너무 빨리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Gill, I, 2011)하고, “인구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은 세번째로 큰 지역이며 GRDP는 34개의 OECD 국가 중 아홉 번째이나, 1인당 GRDP는 낮은 수준이므로 수도권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권고(OECD, 2010)
-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중추역할을 해 온 수도권을 지방과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를 지속하여 자본 유출이 많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근본대책 필요

▶ 따라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추진하되,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 인프라와 기업유인체계를 동시에 정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국토정책으로 전환²²⁾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 정책으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로의 입주가 완료되고, 공기기업의 혁신도시 이전 등이 상당히 진전되는 등 지방발전의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므로 이제 수도권규제에 기업투자가 묶여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수도권의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신설 허용
 - 2015년 1월 현재, 15개 중앙행정기관 중 13개 기관 모두 이전 완료(법무부와 과천청사관리사무소 잔류)하여, 14개 기관 중 11개 기관 입주 완료²³⁾됐으며, 60개 공공기관 중 37개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 완료되었음²⁴⁾

20) 이은경(2009), 현행 수도권정책의 문제점과 수도권 성장정책의 정립방향, 경기개발연구원

21) 조선일보, 2015.6.1. 보도, “중국공산당은 2015년 4월 30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징진지 협동발전계획 요강’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징진지(京津冀)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텐진과 허베이성(옛 이름 지저중·冀州)을 합친 중국의 수도권을 의미하는 말이다.”

22) 나중규·이춘근(2007)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유기적 분업구조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상호협력력을 제안(수도권규제 완화에 대응한 지역발전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3) 중앙행정기관(과천청사) 이전 현황 : 입주 완료(11개 기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인지방식약청, 서울공정거래소, 정부합동콜센터,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지방교정청, 법무부(잔류), 과천청사관리소(잔류) * 2015년 내(3개 기관)-서울지방조달청, 서울출입국사무소, 방위사업청

24) 공공기관의 혁신도시의 이전 현황(60개 기관) : 이전 완료(37개 기관)-품질관리단(용인), 국립농산물품질원(안양), 농수산식품연수원(수원), 국립전파연구원(안양), 지방행정연수원(수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수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성남), 노동부고객상담센터(안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과천),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천), 복권위원회(과천),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과천), 전기위원회(과천), 무역위원회(과천), 광업등록사무소(과천), 한국

- 기존 공장 증설의 경우 새로운 투자가 제약받지 않은 수준에서 증설 허용. 특히 공장입지 투자가 보류된 기업이 많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신속한 규제 완화 필요
- 수도권규제로 인해 공장입지 투자 보류가 많은 자연보전권역은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중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의 규제 완화 수준으로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신설이 허용되도록 규제완화 후속법령(수생태계법, 산업집적법, 수정법령 등)의 개정작업을 2015년 내에 마무리해야 함. 다만, 자연보전권역을 세분화하여 상수원보호지역 및 수변지역에 대한 환경 규제는 유지하되, 기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 수준으로 완화²⁵⁾
-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도시형 업종 및 첨단업종 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상수원 보호 규제 등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들 규제의 단순화/합리화 작업도 병행 필요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규제의 합리화(예시)]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I 권역이 아닌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고시 시행(1984.7.11)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기존 공장으로서 수생태계법 개정내용 준수 조건으로 부지면적의 50~200% 증설을 허용 또는 면적상한 폐지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²⁶⁾을 통해 폐수처리기준을 강화하되, 처리기술에 따라 공장입지 허용
- 공장입지 형태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첨단업종과 일반 업종 간 증설범위 차등 적용
 - ▷ 산업단지 : 규모 · 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 · 증설 · 이전 허용
 - ▷ 공업지역
 - [첨단업종]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I, II 권역' 외 : 규모제한 폐지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II 권역' 내 : 기존 부지의 200% 증설
 - [일반업종]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I, II 권역' 외 : 기존 부지의 100% 증설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II 권역' 내 : 기존 부지의 50% 증설

가스안전공사(시흥), 국립특수교육원(안산), 국립중자원(안양), 농촌진흥청(수원), 국립농업과학원(수원), 중앙119 구조단(남양주), 기술표준원(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천), 도로교통공단(수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왕), 대한적십자사(화성), 영화진흥위원회(남양주), 한국석유공사(안양), 교통안전공단(안산), 한국농어촌공사(의왕), 한국콘텐츠진흥원(고양), 한국가스공사(성남), 한전KPS(성남), 한국도로공사(성남), 한국예탁결제원(고양), 대한석탄공사(의정부), 한국교통연구원(고양) *2015년 내(16개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안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양), 국립식량과학원(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수원), 국립축산과학원(수원), 한국농수산대학(화성), LH(성남), 국제공무원교육원(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 법무연수원(용인), 한국전력기술(용인), 한국정보화진흥원(용인), 한국식품연구원(성남), 주택관리공단(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가평),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안양) *2016년 내(4개 기관)-에너지관리공단(용인), 국토연구원(안양),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안양), 중앙공무원교육원(과천) *시기 미지정(3개 기관)-국립경찰대학(용인), 국방대학교(고양), 한국시설안전공단(고양)

25) 경기도(2014),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 참조하여 대안 재정리

▷ 기타 지역

[첨단업종] 1천㎡ 이내 → 기존 부지의 100% 증설

[일반업종] 1천㎡ 이내 → 기존 부지 내 증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용지 조성사업 허용면적 상향 : 6만㎡ → 100만㎡

-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관리기본법으로 전환, 과밀억제권역 위주로 대폭 축소하고, 이전적지 및 낙후지역에 정비발전지구 도입

26)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수생태계법 개정 추진 현황

- 2008.10 정부 자연보전권역 공업입지 규제 합리화 약속(2010년까지 확대 허용)
- 2010.8 수생태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계류 중 18대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8),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국토교통부(2015.), 국토교통통계누리(2013 말 기준)
경기개발연구원(2014), 수도권규제 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
경기도(2004),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2006), 수도권규제 피해사례 현황
경기도(2009), 기업투자 현황(2009.2.5.~2009.2.28)
경기도(2011), 규제 아닌 자유, 미래를 위한 투자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2008), 불량규제 풀어 대한부국 만든다
김경환·임상준(2004), 수도권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김은경(2008), “10.30 수도권규제 개선에 따른 96개 첨단업종 투자허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2007), 수도권규제 개혁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김지현(2014), 수도권규제 문제점과 합리화 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진영(2012), “제조업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른 입지정책 방향 : 산업단지 내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경쟁력연구소, *Industrial Location*, 제48호, 2012.12., pp.13-22.
김재철(2001),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위기,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나중규·이춘근(2007),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지역발전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신원득 외(2012), 수도권-지방 간의 상생발전전략, 경기개발연구원
박상원·전명진(2011), 수도권 공업입지 규제가 주변지역 제조업 입지에 미친 효과분석, 지방행정연구원
박홍우(2009), 수도권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효과와 보완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통상자원부, 2011~2014년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양금승(1998), IMF 체제하의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양금승(2008), 수도권규제 완화의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전국경제인연합회
윤철현·손태민(1996), “수도권 분산정책의 평가와 대응권 개발논리, 국토계획 31(5):29~46
이수행(2013), 수도권규제 정책의 불합리성과 개선방향,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 통계자료(2015.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2015.5)

Gill,I(2011), “Improving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OECD, *OECD Regional Outlook 2011 : Building Resilient Regions for Stronger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OECD(2007). *Globalisation and Regional Economies : Can OECD Regions Compete in Global Industries?*.

OECD(2010). “Korea”, in OEC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OECD(2013), *OECD Regions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OECD(2015), “The secrets of successful cities”, in OECD, *The Metropolitan Century : Understanding Urbanisation and its Consequences*, OECD Publishing, Paris.